

I. 序論

1996년 10월 11일 우리나라의 OECD正會員 加入이 최종적으로 確定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OECD의 29번째 정회원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OECD가입은 1990년대 초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現政權 出帆이래 본격화되었다. 1993년 7월에 발표된 「新경제 5箇年計劃」에는 우리나라의 OECD가입을 1996년까지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政府內에 OECD加入 準備團이 부서별로 구성되어 OECD측과 2년여의 기간동안 긴 協議를 벌였다. OECD측과의 分野別 協議過程에서 OECD會員國들은 우리나라의 制度를 OECD의 수준에 맞출 것과 市場自由化를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分野別로 制度를 整備하고 市場自由化 계획을 발표하는 등 OECD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며 國內産業을 先進化시키는 方向으로 작업을 진행시켜 왔다.

保險分野의 경우 1994년 12월 OECD 保險委員會에서 우리나라의 읍저버 자격을 심사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加入協議가 시작되었다. 1995년 12월에는 우리나라의 正會員 資格審査가 있었는데, 정부대표단은 이 회의에서 國內保險市場의 「自由化計劃」을 발표하고 이를 중심으로 회원국들과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 이후 1996년 6월의 保險委員會 및 7월의 CMIT/CIME 合同委員會 등에서 기 발표된 保險市場自由化計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한 후 우리나라를 正會員으로 초청하는 데 있어서 보험분야에는 문제가 없다는 보험위원회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OECD 加入時의 保險分野 協議過程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1995년 12월에 발표된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자유화계획이라 할 수 있다. 그 주요내용은 ① 保險仲介人制度의 導入과 對外開放 ② 經濟的 需要審査(ENT)制度의 廢止 ③ 國境間去來(cross-border)의 追加許容 ④ 再保險의 早期自由化 ⑤ 損害査定業 및 保險計理業의 開放 등인데, 이들 조치의 대부분은 과거 UR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한 自由化 日程이나 내용보다 早期에 시행되거나 확대된 것들이다.

우리 정부가 약속한 위와 같은 自由化措置들은 최근 國家間 市場統合이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적 환경하에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消費者의 權

益増進, 市場原理에 의한 保險社間 건전한 競爭促進, 保險關係制度의 透明性 및 先進國들과의 調和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OECD加入協議 過程에서 우리나라가 발표한 자유화 조치들은 市場保護 측면보다는 市場原理를 產業內에 더 適用한다는 原則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에 익숙한 OECD의 既存 會員國들에 비하여 우리 보험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악의 경우 새로이 조성되는 競爭的 環境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도산하는 기업이 발생할 소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보험시장 자유화계획의 施行方案과 그에 따른 細部規程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화계획의 波及效果와 구체적인 對應方案 등에 대한 研究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OECD가입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점검해 보고 자유화계획의 파급효과와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原論的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개괄적인 OECD概要 및 加入協議經過와 가입협의 과정에서의 우리정부와 OECD측과의 協議內容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自由化 措置들이 우리 보험산업에 미칠 影響을 分析하였다. 또한 새로운 保險環境下에서의 우리나라 保險產業의 對應戰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보험시장에서 내국사들은 외국사에 비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OECD회원국들의 상황과 비교하여 분석해 본 후 對應方案에 대한 개괄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II. OECD概要 및 保險分野 關聯內容

1. OECD概要 및 保險委員會

가. OECD의 概要

1) OECD 設立背景 및 會員國 現況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개발협력기구)는 회원국간 經濟協力 및 政策調整을 위한 대표적인 협력기구의 하나로서 美·蘇 冷戰體制下에서 미국과 서유럽 중심의 市場原理를 중시하는 資本主義 經濟體制를 수호하기 위하여 1961년 9월에 창설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중심의 대결구도하에서 미국은 동유럽 공산주의의 서유럽 확산을 막기 위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유럽 경제를 복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지원계획인 유럽경제부흥계획(일명 마샬플랜)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을 집행하고 서유럽 제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1948년 OECD의 모체가 되는 歐洲經濟協力機構(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가 설립되었다. 그 후, 유럽은 단기간내 급속한 경제부흥을 이룩한 반면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가 급증하는 등 미국과 유럽간의 경제협력에 대한 여건이 변화하게 되자 OEEC도 성격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한편, 서유럽내에 지역경제공동체들이 난립하게 됨에 따라 이들 그룹을 포괄하고 북미와 아시아의 선진공업국들의 가입도 허용하는 보다 광역적이고 새로운 성격의 경제협력기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OEEC를 擴大·改編하여 OECD를 창설하게 된 것이다.

창설 당시 OECD 회원국은 OECD의 전신인 歐洲經濟協力機構(OEEC)의 18개 全會員國들과 美國 및 캐나다 등 20개국이었다. 그 후 1964년 4월 아시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日本이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969년 6월에는 濠洲가, 1973년 5월에는 뉴질

랜드가 가입함으로써 24개 회원국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뒤이어 20여년만인 1994년에는 멕시코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995년에는 東歐圈의 체코가 1996년에는 헝가리와 폴란드가 정식가입하여 現在 OECD 總會員國은 28個國이다.

<表 1> OECD 會員國 現況

구 분		회 원 국
북 미		미국, 캐나다
유 럽	EC 12개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EFTA ¹⁾ 6개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기 타	터키, 체코, 헝가리, 폴란드 ²⁾
오 세 아 니 아		호주, 뉴질랜드
아 시 아		일본
남 미		멕시코

註: 1)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2) 체코, 헝가리, 폴란드는 1991년 1월부터 동유럽국가 지원프로그램(Partners in Transition Program)에 의해 읍저버로 참여하여 음.

2) OECD의 目的과 性格

OECD 설립의 주된 목적은 各 會員國의 經濟成長을 서로 도와 世界經濟發展에 貢獻하고 開發途上國에 필요한 援助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汎世界的 自由貿易의 擴大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OECD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와는 달리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 협상을 위한 국제기구가 아니라 會員國間의 相互 關心分野에 대한 政策을 討議하고 協助·調整하기 위한 클럽(club)형태의 기구이다.

또한 OECD는 개발원조, 금융, 무역, 직접투자는 물론 경쟁, 에너지, 고용, 교육, 소

비자보호 등 모든 경제·사회·복지문제를 포괄하는 綜合的인 經濟協議機構로서 각국 경제정책 상호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조정하는 국제기구이기도 한데, 이러한 각국 경제정책들의 조정을 위해 회원국 정부간 정보교류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포럼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OECD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政府代表들이 회합하여 각국 경제정책을 비교·검토하고 상호의견의 교환 및 조정을 거친 후 「一般的 合意」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때, 도출된 OECD의 결정 및 권고사항은 會員國 全體의 合意를 原則으로 하므로 특정 회원국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국가의 특수사정에 따른 규정적용의 例外的인 留保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유보를 하지 않은 合意事項에 대해서는 「信義·誠實의 原則」에 따라 實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원국들은 상호간에 暗默的인 壓力(peer pressure)을 통하여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게 된다.

3) OECD의 主要活動

OECD의 활동영역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經濟問題뿐 아니라 環境·教育·勞動 등 會員國 國民의 삶의 質에 관련된 분야를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

현재 OECD의 主要活動들을 살펴보면, 각국의 거시경제정책의 협의 및 조정, 구조조정의 촉진, 자유무역의 확대·발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에너지정책 개발, 환경보호, 개발원조의 확대,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 첨단기술개발 촉진, 소비자보호, 농업 및 어업분야 정책개발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그 밖에도 국제간 이중과세방지 및 조세도피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모색, 교육제도의 개혁, 여성지위향상, 농촌지역의 균형개발, 정부조직의 효율화 방안 등 삶의 質 提高와 관련된 廣範圍한 分野의 政策을 開發하여 시행하고 있다.

OECD는 회원국들의 주요 經濟·社會問題에 대해서는 討議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UR·環境協商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논의될 사안에 관해서는 회원국간의 事前 의견교환과 협의를 통하여 共同解決策 및 戰略을 모색한다. 또한, 주요 國際經濟問題에 대해서는 회원국간에 적용시킬 規範을 만들어 공표·시행하

는데, 이로써 OECD는 국제경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게 된다.

4) OECD의 組織과 機能

OECD의 主要組織으로는 이사회, 각종 위원회, 사무국 및 관계기구 등이 있다.

理事會는 전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最高意思決定機構로서 각료이사회와 상주대표이사회로 구분된다. 閣僚理事會는 회원국의 각료로 구성되며, 연1회 개최되어 중요사항을 논의한다. 각 회원국의 OECD주재 대표자로 구성되는 常駐代表理事會는 주1회 정도 개최되어 정책문제토의, 예산승인 등 각종 현안에 대하여 토의한다. 이사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보조기구로서는 이사회 결정사항의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인 執行委員會와, 무역자유화와 통화제도개혁방안 등과 같은 사안을 검토하는 特別執行委員會 등이 있다.

각종 委員會는 분야별로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그 분야의 實質的인 問題를 다루는 토의기구로서 26個의 分野別 專門委員會가 있으며, 保險委員會(Insurance Committee)도 이 중의 하나이다¹⁾. 보험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에서 다루도록 한다.

事務局은 OECD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각 분야에서 명망 있는 교수·관료출신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理事會와 각종 委員會의 活動을 支援하고 있다. 사무국 요원들은 토의의 근거가 될 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국 대표들에게 배포하고 각종위원회의 회의에도 참가하는 등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事務局長은 임기 5년으로 이사회에 의해 선출되는데, 對外的으로 OECD를 代表하고 사무국을 지휘하며 OECD의 제반활동을 기획·관리하고 있다. 사무국장 밑에는 3명의 사무차장과 2,000명 가량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OECD내에는 각종 위원회에 비해 목적이나 활동 그리고 가입절차 등에서 신축성을 갖는 半獨立的 關係機構인 국제에너지기구, 개발센터, 핵에너지기구, 교육연구혁신센터 및 조선작업반 등이 있다. 國際에너지機構는 제1차 오일쇼크 이후 OECD내 주요 석유소비국들이 세계 석유공급시장의 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1) 위원회의 종류 및 주요 활동내용은 p. 13의 <表 2> 참조.

1974년 설립한 기구로서 국제에너지계획의 실행을 통해 비상시 석유수급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석유시장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및 정보체계 구축, 대체에너지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開發센타는 경제개발 및 일반경제정책의 수립·집행에 관한 회원국의 지식과 경험을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보급시킬 목적으로 1962년 설립되었다. 核에너지機構는 원자력기술개발 및 동 분야의 국제적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구미핵에너지기구를 1972년 확대·개편한 것으로 평화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핵에너지의 생산·개발과 관련된 연구촉진, 정보교환 및 핵안전사고 방지장치를 강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 敎育研究革新센타는 교육분야에 있어서의 연구개발을 증진시키고 회원국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68년 설립되었으며, 造船作業班은 조선산업분야의 정상적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조선국가간의 정책을 검토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 保險委員會

1) 保險委員會의 任務

26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保險委員會는 1961년 9월 30일 설치된 이래 회원국의 保險關聯 制度 및 監督規制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보험위원회의 주요 사명은 保險市場의 機能을 改善함으로써 保險産業의 發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經濟發展에 공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원국 상호간의 保險서비스 國際交易을 促進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회원국이 保險政策을 수립하도록 유도하여 國際的 協力을 強化하는 것이 동 위원회의 주요 임무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험위원회는 국내외적 보험이슈에 대한 討論의 場을 제공하고, 보험서비스의 국제교역 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회원국의 보험시장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감독과 규정에 대한 정책지향 연구를 수행하고 보험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資本移動 및 經常貿易外去來委員會(CMIT) 등 다른 금융 및 금융거래 관련업무를 다루는 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보험분야의 자유화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非會員國에게도 보험관련 규제 및 감독의 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써 보험시장의 세계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2) 保險委員會의 構成 및 傘下機構

보험위원회는 각 회원국 대표의 구성에 있어서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政府, 監督機關, 業界를 망라하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유럽보험위원회(European Insurance Committee), WTO 등 국제기구도 보험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보험위원회는 산하에 OECD域外國을 포함하는 지역의 국제보험문제 등을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연구하는 開途國保險에 관한 臨時그룹(Ad Hoc Group on Insurance in Developing Countries), 회원국의 보험활동에 관한 연도별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위원회에 제출하는 統計作業班(Working Group on Insurance Statistics), 보험서비스에 관한 資本移動 및 經常貿易外去來委員會와 保險委員會의 合同作業班(Joint Working Group on Insurance Services of the Committee on Capital Movements and Invisible Transactions and the Insurance Committee) 및 보험회사의 支給能力과 관련한 政策專門家그룹(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Insurance Solvency) 등을 두고 있다.

3) 保險委員會의 主要 活動

보험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크게 다음의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① 保險市場의 自由化와 國際的 協力の 強化

보험위원회의 주요 활동영역 중 하나는 保險分野에 있어서 國際的 協力を 강화시

키는 것으로서 각 회원국 시장에서 다회원국 保險會社の 設立을 자유화하고 國境間 移動(cross-border)의 自由化擴大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CMIT)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주로 資本移動 및 經常貿易外去來委員會와 保險委員會의 合同作業班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중 보험분야 항목에 대한 회원국의 자유화 유보사항을 조사하는 한편, 자유화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상무역외거래 규약 보험항목의 개정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험위원회는 또한 保險서비스의 國際交易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 예를 들면 OECD 회원국들간의 상호승인원칙(mutual recognition principles) 개발 등에 관하여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NAFTA협정, WTO협상 등 他國際機構의 보험관련 현안내용을 파악하여 이들 기구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간 사전협의 및 의견조율을 주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밖에도 보험위원회는 각국의 國際交易에 관한 法規分析과 함께 보험서비스 교역에 障礙가 되는 요소들을 조사하고 있다.

② 保險會社の 財務的 支給能力

保險産業은 산업특성상 전통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하에서 강력한 보호 및 통제를 받아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모든 국가에서 점차 規制가 緩和되고 국제간 교류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環境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보다 개선된 보험회사의 危險管理技法과 철저한 當局의 監督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수 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재무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보다 효과적인 보험감독체계 및 위험관리기법의 고안·실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보험위원회는 1993년 保險 監督政策과 技術的 支給能力(technical solvency)을 다루는 政府 專門家들로 구성된 專門그룹을 창설하였다. 이 그룹은 보험과 재보험의 감독기법을 비교분석하는 한편, OECD회원국들의 지급능

력에 관한 규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 분야의 최근 주요 정책이슈들에 대하여 토론을 개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 재보험활동 규제, 청산규정(winding-up rules), 보험계리인, 시장세분화 이슈, 균등책임준비금, 조기경보시스템, 재보험 보유 및 캡티브설립 등의 주제에 대하여 토론·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예로 보험위원회는 再保險 분야의 情報公示와 관련된 OECD 권고서 작성작업도 하고 있고, 1995년 11월에는 『OECD회원국들의 보험지급능력 감독(insurance solvency supervision in the OECD countries)』이라는 보고서도 발간한 바 있다.

③ 政策分析

보험위원회는 그 주요 활동 중 하나로서 회원국의 보험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分析的 基礎研究를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험서비스와 다른 금융서비스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규제체계와 보험사 전략에 관한 연구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新보험상품의 감독규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에게 政策樹立을 위한 分析的 基礎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OECD 회원국들의 生命保險商品 稅制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회원국들의 보험상품 관련 세제체계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보험회사 破産法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수많은 국가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파산이나 재무적 위기상황 등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보험회사의 投資政策에 관한 規程을 연구하여 투자감독시스템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투자규제와 관련한 분석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보험위원회는 個人年金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는 국민연금체계에 있어서의 民營保險會社의 역할과 연금기금 및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규제 체계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④ 保險市場과 監督規制의 모니터링

보험위원회의 또 다른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각 회원국 보험산업에 관한 情報의 交換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보험위원회는 각국 보험당국자들간의 몇 안되는 의사소통채널 중 하나이며 정부측과 민간측의 대표자가 견해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합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위해 보험위원회는 각 회원국들 및 유럽공동체 등 주요 保險市場을 모니터링하고 국부적 이슈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해보험,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공해보험, 노령퇴직보험 및 재보험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각국의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역할 및 보험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토의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몇몇 회원국들의 保險市場 規制體系와 經濟構造에 대하여 심도깊은 분석을 행하였는데 이는 최근 몇몇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金融改革에 따라 보험관련 감독규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보험위원회는 금융시장위원회(CFM),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 위원회(CMIT), 고용·노동·사회문제 위원회(ELSAC), 농업위원회(CA), 환경위원회(EPC), 철강위원회(SC), 핵에너지 분야의 제3자보상책임에 대한 정부전문가 그룹 등의 OECD內 다른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동관심 이슈에 대해 토의하고 있으며,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국제기구와도 共同으로 研究를 수행해 왔다. 이를 통하여 OECD 보험위원회가 보험분야에서의 全世界的 協力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非會員國들도 OECD의 研究와 經驗을 共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情報의 蒐集과 交換

보험위원회는 산하의 保險統計作業班을 통하여 모든 OECD 회원국들의 保險統計資料를 수집하여 통계연감을 발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원국간

제도가 상이함으로써 발생하는 통계처리의 비정합성을 제거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의 保險關聯 法規 및 規程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1983년부터 1994년까지의 OECD회원국 보험통계에 관한 연차 보고서 및 "Paratte Report"로 알려진 개인연금의 감독체계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 등이 발간되었다.

⑥ 東유럽國家들의 保險産業 定着 支援

보험위원회는 동유럽국가경제협력센터(Centre for Co-operation with the Economies in Transition)의 지원하에 東유럽國家들에게 技術的 支援을 해주고 있는데, 보험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한 자문, 감독체계수립 및 규정입안시 기술적 지원, 현행 법규 및 특정 이슈에 대한 분석, OECD회원국들의 법규체계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이들 국가가 조속히 자본주의적 보험산업을 정착시키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험위원회는 1992년 파리에서 9개 동유럽국가들과 주요 보험정책이슈를 토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994년에는 보험위원회와 헝가리 보험감독국의 주최로 부다페스트에서 東西協議會(East-West Conference)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고, 1997년에는 폴란드에서 제2차 동서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위원회는 OECD에 가입하려고 하는 非會員國들의 會員國 資格審査 過程에도 참여한다.

<表 2> OECD의 分野別 專門委員會 및 主要活動

위 원 회 명 칭	주 요 활 동 내 용
경제정책위원회(EPC)	회원국의 경제정책을 검토·토의·조정
경제동향검토위원회(EDRC)	개별 회원국의 경제현황과 정책을 정기적(매년 1~2회)으로 검토하고 권고
통화·외환문제위원회(CMFEM)	회원국의 통화·외환정책을 검토
환경위원회(EPC)	회원국간에 적용시킬 국제적 환경기준과 규범의 토의 및 채택
개발원조위원회(DAC)	개발도상국 원조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문제 토의
공공관리위원회(PMC)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직 및 기능문제 검토, 행정규제완화, 시장기능활성화 등의 문제를 검토
무역위원회(TC)	자유무역의 확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문제를 토의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국제 투자와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관련된 규범을 검토
자본이동 및 무역외거래위원회(CMIT)	국제간 자본 및 서비스거래의 자유화 문제를 토의하며 주로 회원국의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이행상황을 검토
지불위원회(PC)	무역외거래, 자본거래 및 장기금융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의 OECD활동에 대해서 이사회에 조언하고 CMIT에 의해 검토된 사항을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검토
금융시장위원회(CFM)	회원국의 금융정책을 평가하고 국제간 자본이동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을 검토·개발
보험위원회(IC)	회원국의 보험정책의 연구·평가 및 보험관련 서비스의 자유화 문제를 검토
재정위원회(CFA)	주로 이중과세방지 및 국제간 조세관계의 통일에 관한 연구·토의
경쟁정책위원회(CCLP)	세계무역을 확대시키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의 개발 및 각국의 관련정책 검토
소비자정책위원회(CCP)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의 개발 및 각국의 관련정책 검토
관광위원회(TC)	국제간 관광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평가 및 정책수단 토의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협력 및 정보교환문제 토의, 각국의 과학기술정책 평가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CICCP)	정보·컴퓨터·통신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회원국간 협조문제를 토의
공업위원회(IC)	회원국간의 공업문제의 토의와 동 분야의 협력증진방안 연구
해운위원회(MTC)	회원국간의 해운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개발 및 회원국의 해운정책 검토
철강위원회(SC)	철강산업의 합리적 구조개선과 비정상 남용조치 방지를 위한 회원국간 협조, 철강산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자간 규범의 창설 등의 기능수행
고용, 노동, 사회문제위원회(ELSAC)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인력정책,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사회정책개발 등의 기능수행
교육위원회(EC)	교육정책의 검토와 권고기능 수행
농업위원회(CA)	농업분야에서의 회원국의 정책검토와 농산물 교역자유화 문제 등을 토의
수산위원회(FC)	수산자원의 개발, 회원국의 수산정책평가, 수산물의 국제교역문제 등을 검토·토의
에너지정책위원회(EPC)	회원국간의 에너지문제에서의 정책협조를 증진하며 세계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수급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의 개발·토의

資料: 재무부 국제금융국, 『OECD관련 자료집』, 1994. 5. 31.

2. OECD 自由化規約 및 保險分野 關聯項目

가. OECD 自由化規約

OECD의 가입신청국은 먼저 회원국으로서의 一般的인 資格條件²⁾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일반적인 회원국의 자격을 갖춘 국가는 다음으로 OECD의 具體的 加入條件³⁾을 만족시켜야 가입이 이루어진다.

OECD 自由化規約은 이 중 구체적 가입조건의 하나인 自由化義務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규약으로서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經常貿易外去來 自由化規約을 지칭한다. 이 양대 자유화규약에는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自由化 義務事項이 분야별로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는데, 주로 자본의 국경간 이동과 외국자본의 신규투자, 외국기업의 설립, 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등에 대한 자유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약에 적시된 자유화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가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회원국의 경제발전 정도, 자유화 수용능력 여부 및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상황에 따라 일정기간 自由化留保(reservation)나 適用免除(derogation)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가입할 때 어떤 조항에 대하여 自由化留保나 適用免除를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유화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유화가 된다는 것은 自國의 거주자(국민 및 기업)와 OECD 회원국의 거주자를 동일하게 대우[內國民待遇]하고, 모든 회원국에 동등하게 적용[無差別待遇]한다는 것을 뜻한다.

2)일반적인 자격조건이란 타회원국과의 최소한의 동질성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多元的 民主主義國家(pluralistic democracy)로서 市場經濟體制(market economy)를 유지하고 人權을 尊重하는(respect for human right) 문명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3)구체적 가입조건은 일반적 의무, 권고적 의무 및 자유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一般的 義務는 OECD 설립목적의 지지, 제규정의 원칙적 수락 및 예산의 분담의무이며, 勸告的 義務는 GATT 11조 및 IMF 8조국으로의 이행과 저개발국가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개발원조제공 의무이다. 마지막 조건인 自由化 義務는 국가간 서비스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經常貿易外去來 自由化規約과 資本移動 自由化規約을 준수해야 할 의무이다.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의 경우 일단 자유화된 항목에 대해서는 再留保가 불가능하며(list A),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경우에는 재유보가 불가능한 list A항목과 재유보가 가능한 list B항목으로 구분되는데, 보험부문의 자본이동 자유화항목은 list A에 해당한다.

양대 자유화규약 중 保險과 直接關聯이 있는 項目은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2개 항목과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의 6개 항목이다.

나. 保險分野 關聯項目

1) 資本移動 自由化規約

資本移動 自由化規約은 前文과 4부 23조로 구성된 本文 및 5개의 附屬書로 구성되어 있다.

資本移動自由化 項目은 부속서 A(Annex A)에 명시되어 있으며 총 16개의 대항목과 91개의 소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主要內容으로서 직접투자, 직접투자의 청산, 부동산거래, 자본시장에서의 증권거래,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거래, 기타 양도증서와 비증권권리의 거래, 공동투자증권의 거래, 국제상거래 및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신용, 금융상의 신용 및 대부, 담보·보증 및 보충금융, 예금계정거래, 외국환거래, 생명보험, 개인적 자본이동, 자본자산의 실물이동 및 비거주자 소유부채자금의 처분 등을 포함하고 있다(<附錄 1> 참조).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중 保險關聯 部門인 XIII 대항목에는 生命保險 契約과 관련한 資本移動 및 確定年金의 送金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보험의 계약, 보험료, 연금, 보험금 등의 거래는 경상무역외거래로 취급되므로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에서 다루어지지만, 생명보험 계약관련 자본이나 확정연금의 이전거래는 자본이동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취급되어 자본이동 자유화규약내에서 다루어진다.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XIII항목은 2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항에는 非居住 保險業者가 居住者인 保險受益者에게 지불하는 資本 및 確定年金의 送金自由化

에 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고, B항에는 居住者인 保險業者가 非居住 保險受益者에게 지불하는 자본 및 확정연금의 송금자유화에 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한편, 이들 자유화항목은 리스트 A로서 일단 자유화된 이후에는 再留保가 不可能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사항으로 이미 자유화된 상태이다.

2) 經常貿易外去來 自由化規約

經常貿易外去來 自由化規約은 前文과 4부 24조로 된 本文 및 4개의 附屬書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은 부속서 A(Annex A)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회원국의 유보내용은 부속서 B에 열거되어 있다. 부속서 A의 자유화항목은 알파벳 순서에 의한 11개의 대항목과 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主要內容은 각종 영업활동, 무역에 부수되는 활동, 운송, 보험, 은행 및 금융서비스, 자본소득, 여행 및 관광, 영화 등 시청각 관련 서비스, 개인소득 및 지출, 공공의 수입·지출 및 기타 일반 등을 포함하고 있다(<附錄 2> 참조).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중 保險部門은 11개 대항목 중 네번째인 D항목으로, 各種保險의 契約 및 締結의 自由化, 保險料 및 保險金의 送金自由化, 外國 保險業者의 支社 및 代理店 設置·運營에 관한 自由化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부문인 D항목은 다시 6개의 소항목(D/1~D/6)으로 분류되며, 각 소항목은 부속서 A의 부속서 I(Annex I to Annex A)에 보다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데, 4부(Part I ~PartIV)에 걸쳐 총 32개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 제1부에는 무역관련보험(D/2), 생명보험(D/3), 및 기타보험(D/4)의 국경간 계약체결 및 보험료, 보험금 등의 이전거래에 관한 내용이, 제2부에는 재보험 및 재재보험의 국경간 계약 및 송금(D/5)에 관한 내용, 제3부에는 외국보험사 지점 및 대리점의 설립 및 운영(D/6)에 관한 항목, 제4부에는 외국보험사 지점 및 대리점과 본사와의 송금 등에 관한 내용이 열거되어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外國 保險事業者의 商業的 駐在 및 營業條件에 대한 문제와 保險서비스의 國境間 去來, 거래에 따른 送金의 自由化 및 同等한 稅制惠澤 등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에는 부속서 중 보험에 관련된 두가지의 理事會 勸告書(No. 32와 No. 76)가 있다. 첫번째 이사회권고서(No. 32)는 保險監督當局間의 制度的인 協助體制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국의 보험감독에 관련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각 국가내의 예외적인 감독조항들은 점차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조항으로 수정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간 감독방식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원국간의 보험거래에 있어서의 제약요인들을 제거하고 효과적인 감독기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번째 이사회권고서(No. 76)는 保險種目の 一般的인 分類에 관한 사항으로 각국의 보험종목에 대한 상반된 해석에 따라 외국사에 보험종목별로 영업면허를 발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III. OECD 加入推進 經過 및 保險分野 協議內容

1. OECD 加入推進 經過

우리나라는 世界經濟秩序 형성논의에 참여하고 國內制度와 慣行을 국제규범에 접근시키려는 능동적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1980년대 말부터 OECD측과 政策協力을 시도하였다. 이후 1990년 2월 關係長官會議에서 1990년대 중반 OECD가입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OECD 산하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2년 1월에는 제7차 5개년계획 심의회에서 제7차 5개년계획 후반기에 OECD가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4월 28일자로 「대외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무부장관의 명의로 加入推進意思를 OECD측에 통보하였다.

1993년 7월 「新경제 5個年計劃」에서 1996년 중 OECD가입을 목표로 OECD측과 가입교섭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하였으며 OECD 關係理事會는 1994년 6월 한국과의 가입조건 협의에 관한 권한을 事務局에 위임하였다. 정부는 정식 가입신청 전에 OECD의 모든 주요 위원회에 우선 읍저버로 가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 위원회의 해당 부처별로 加入準備團을 결성하여 읍저버加入을 추진하였다. 이 결과 1994년에는 각 위원회별로 우리나라의 읍저버 資格審査가 진행되었으며, 보험위원회의 경우 동년 12월 초의 심사를 거쳐 1995년 1월 읍저버자격을 취득하였다.

그 후, 우리 정부는 1995년 3월 김영삼대통령의 유럽순방 중 OECD가입신청서를 공식으로 제출하였으며 1995년 5월 18일 OECD 常駐代表理事會는 한국과의 加入協議計劃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우리나라는 兩大 自由化規約에 대한 受諾, 留保與否 및 留保時 留保論理 등을 담은 自由化規約受諾草案(Initial Memorandum)을 OECD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OECD측은 동 내용을 심사한 후, 회원국들의 諒의사항을 취합하여 서면질의하고 이에 대해 우리정부가 서면답변하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1995년 10월 OECD 事務局은 우리나라가 제출한 答辯資料를 심사한 후 가입과 관련된 政策協議를 위하여 위드렐국장(Mr. William H. Witherell)을 단장으로 한 高位協議團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였으며 보험분야의 경우 金融·財政 및 企業局(DAFFE)의 行政擔當官(Principal Administrator)으로 있는 라블(Mr. André Laboul)이 방한하여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1995년 11월부터 심사대상 위원회별로 본격적인 加入審査가 시작되었으며 보험분야의 경우 1995년 12월 1일 제56차 보험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1996년 7월 제2차 CMIT/CIME 合同委員會 심사가 종료됨으로써 OECD가입에 필요한 11개 위원회의 심사 및 검토절차가 완료되었다(<表 3> 참조). 심사를 마친 각 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정리한 최종의견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996년 10월 11일 OECD 이사회에서는 한국을 29번째 회원국으로 초청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表 3> OECD 委員會別 加入審査 및 檢討終了 時期

위 원 회 명	심사 및 검토 종료시기	비 고
해운위원회	'95. 11	심 사 대 상
보험위원회	'95. 12	
금융시장위원회	'96. 2	
환경위원회	'96. 5	
재정위원회	'96. 6	
CIME/CMIT	'96. 7	
농업위원회	'95. 11	정책검토대상
경제발전검토위원회	'96. 3	
노동위원회	'96. 4	
무역위원회	'96. 5	

2. 保險委員會 帑저버加入 協議內容

1994년 12月 1日 파리에서 개최된 OECD保險委員會에서는 우리나라의 帑저버加入에 관한 協議가 있었다. 동 協의를 위해 OECD사무국에서는 우리가 보낸 「國內保險市場의 現況과 制度」라는 비공식 協의자료를 기초로 하고 사무국의 보험전문가가 수집한 韓國의 保險市場 關聯資料를 정리하여 한국의 帑저버 가입을 協의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한 후 각 회원국에 미리 보냈다. 각 회원국대표들은 이 자료를 분석한 후, 각자의 追加의인 質問事項을 정리하여 사무국으로 송부하고, 사무국은 모든 회원국의 질문내용을 취합·정리하여 우리나라의 정책당국(재무부 증권보험국)으로 송부하였다⁴⁾.

政府에서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질문내용에 관한 答辯書를 준비하여 보험위원회會議에 참석하였는데 帑저버 가입심사 당시 OECD 會員國들이 關心을 보였던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질문서의 주요 흐름은 우리나라 保險市場의 特性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자국의 보험제도와와의 차이점이나 자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保險關聯 機構와 制度 등에 관하여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다. 損害保險社의 長期貯蓄性商品에 관한 질문, 火災保險 풀(pool)의 解體理由, 保險社와 他金融機關의 業務領域 問題, 保險商品 認可制度, 自動車保險 經營評價制度, 保險料率 自由化의 구체적인 사항, 保險販賣組織(모집인과 대리점의 차이 등) 등 우리 보험산업의 특이한 제도를 이해하려는 질문들이었다. 保險監督院과 保險開發院 등 保險關聯 機構에 대한 任務, 豫算調達方式, 人力構造 등에 관하여도 많은 관심을 보였고 자국과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클럽형식으로 운영되는 OECD 특성을 감안할 때 새로운 豫備會員國의 實情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保險市場의 開放化 現況과 외국사가 우리 시장에 진출했을 시 실제로 平等待遇(內國民待遇)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많았는데 이는 각 會員國의 利害와 直結되는 현실적인 질문들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보험영업을 원

4)주요 질문내용은 pp. 23-24의 <表 5> 참조.

하는 外國保險社들이 한국정부의 認可를 받기 위해 필요한 條件, 특히 損害保險 合作 會社 設立에 관한 規程 및 기존 합작사의 設立背景과 活動 등에 관한 사항이 많았으며, 아울러 外國社의 國內支店 設立時에 행하는 우리나라의 經濟的 需要審査(ENT)의 基準이 무엇이며 현재 모든 OECD회원국에서 경제적 수요심사를 하지 않는 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그밖에 損害保險의 仲介人制度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고, 再保險과 關聯된 事項으로는 '海外로부터의 保險料率求得에 대한 制限'과 '國內社 優先出再制度'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다.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韓國은 현재 수준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自由化計劃을 推進할 用意가 있는나는 것과 外國社가 韓國에 進出하여 營業함에 있어 지금보다 더욱 活動的으로 할 수 있도록 措置를 취할 의사가 있는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保險委員會 正會員加入 協議內容

1995년 12월 우리나라의 정회원 자격심사를 하는 보험위원회를 앞두고 회원국들이 우리 정부에 보낸 질문서들은 우리 정부가 1995년 7월에 제출한 自由化規約受諾草案의 留保內容과 관련하여 追加 自由化措置를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⁵⁾.

구체적으로 보험사설립 허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經濟的 需要審査(ENT)의 實施理由, 細部內容 및 經濟的 需要審査의 廢止 또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의 적용계획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보험사설립과 관련된 그밖의 사항으로서 外國人株式投資限度 自由化計劃, 보험사와 관련한 M&A규정, 손해보험의 경우 미국계 지점만이 있는 이유 및 韓·美 雙務協定이 기타 OECD회원국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 保險社設立許可基準에 대한 상세한 내용, 子會社 및 支店設立許可基準의 내용, 외국자회사 및 지점의 金融電算網 접근 허용여부, 保險計理 및 損害査定業에 대한 外國人投資 自由化措

5) 주요 질문내용은 pp. 25-26의 <表 6> 참조.

置計劃 등에 관한 질문이나 자유화 요구가 대부분이었다.

國境間 去來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既허용종목에 대한 확인요청과 함께 생명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 종목의 추가적인 확대허용과 국내진출 외국보험사의 國境間 去來 중개행위 허용을 요구하였다. 또한 재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자유화 일정의 단축을 요구하였으며, 보험중개인(broker)제도의 도입 등 보험판매조직에 관련된 구체적 요구 및 자유화 의사를 타진하는 질문이 많았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1995년 12월 1일 보험위원회 자격심사 회의시 OECD측의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국내관련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外國事業者에 대한 內國民待遇原則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전향적인 保險市場自由化計劃을 발표하였다(<表 4> 참조). 회의에서 OECD회원국 대표들은 우리 정부가 발표한 보험시장자유화계획의 구체적인 推進計劃 및 細部內容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表 4> 保險市場 自由化計劃(1995. 12)

- 國境間 去來 許容種目の 擴大(1997.1)
- 經濟的 需要審査(ENT)의 廢止(1997.1)
- 保險仲介人制度의 國內導入(損保:1997.4, 生保:1998.4) 및 對外開放(1998.4)
- 再保險市場의 早期自由化(1997.4)
- 損害査定業, 保險計理業의 對外開放(1998.4)

그 후 1996년 6월의 보험위원회 회의, 1996년 4월 및 7월의 CMIT/CIME 合同委員會 審査 등을 통하여 보험시장 자유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導入方向 및 細部內容에 대한 논의를 거쳐 동년 8월에 우리나라의 정회원 초청을 적극 권장하는 보험위원회 결정을 이사회에 최종 보고서의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表 5> 읍저버加入協議時의 保險分野 OECD 關心事項

구 분	OECD 관심사항
보 험 제 도	• 장기손해보험의 내용 • 자동차보험 경영평가제도의 내용, 시행이유 및 결과 • 상품신고제도 내용 • 화재보험 pool 폐지 이유 및 결과 • 보험사업허가기준 • 지급능력기준의 내용 • 보험사업자에 대한 감독제도의 내용 • 생보사 국내주주의 자격기준 • 보험계리인의 역할 • 해약환급금에 대한 규제내용 • 보험사 경영평가기준과 동 기준에 미달시 제재내용 • 보호예탁금 반환기준 • 보험회사 해산절차, 보험회사 파산경험 유무 • 보험료자유화계획의 내용
보험관련기구	• 보험감독원의 기구 및 조직 • 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 • 보험개발원의 역할 • 생·손보험회의 자율규제기능
보험시장개방	• 보험대리점(중개인) 자유화계획 • 외국보험사업자의 한국보험시장 진출시 기준 • 보험사업허가신청시 모든 OECD회원국에 대한 동일한 내국민대우 여부 • 손해보험에서 외국사의 자회사 및 신규합작사 진출제한 이유 • 손해보험에서 합작형태진출에 대한 규제내용 • 경제적수요심사의 실시이유 및 내용, 향후전망, 국내외 보험사에 대한 동등적용 여부 • 보험시장접근 자유화계획 • 합작생보사의 경우 2인이상의 외국인지분참여 불허이유 •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설치에 관한 외국환관리법령 내용 • 내국민대우원칙이 보험감독제도 전반에 적용되는지의 여부 •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의 해외투자시 규제유무 관련규정 • 외국보험사 국내현지법인의 신상품개발시 제한 유무 • 보험업법상의 외국보험사업자의 개념 • 외국보험사 국내현지법인도 국내재산 보유의무 유무

구 분	OECD 관심사항
보험시장개방	• 합작사와 협지법인에 대한 차별대우 유무 • 보험사업에서의 상호주의원칙의 적용 유무 • 국경간 거래의 허용내용, 관련규정 및 자유화계획 • 국내에서 가입이 불가능한 보험에 대한 국경간 거래의 허용여부 • 재보험거래 제한내용 및 조기자유화 실시여부 • 생명보험의 재보험자유화계획 • 외국재보사의 국내진출에 대한 제한내용, 진출현황
자 산 운 용	• 보험자산운용의 3대원칙 중 공공성의 개념 • 자산운용과 관련 투자지역, 통화매칭, 자산/부채매칭, 투자대상 다양화 관련원칙의 유무 • 현예금 보유한도이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자산운용규제상의 차이 • 책임준비금에 상응하는 자산과 자기자본에 상응하는 자산의 구분 여부 • 파생금융상품 투자가능여부
보 험 모 집	•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의 지위와 자격,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차이 • 보험판매에 관한 규제 및 감독수단 • 보험모집조직의 보수체계와 이에 대한 규제여부 및 방법 • 손해보험 공동인수제도 • 점포설치 제한이유 및 국내의 보험회사 동등적용 여부
기 타	• 한국생보시장의 급성장이유 및 향후전망 • 저축성보험상품의 정의 • 단체생명보험시장의 현황 및 전망 • 최근 생명보험산업의 성장둔화이유 • 체신보험 및 농·수협공제시장 동향 • 개인연금보험, 제2단계 금리자유화의 상세내용 및 예상효과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외국계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이유 • 보증보험의 복점유지 이유 • 상호회사가 없는 이유 • 강제보험의 현황과 이유 • 보험사업자의 타사업영위허가 사례

<表 6> 正會員 加入協議時의 主要 爭點事項

자유화항목	OECD 요구사항	우리나라 조치사항
D/2	· D/2와 관련하여 모든 사항에 대해 제한이 없음을 확인 · 외국보험사업자 국내지점의 모회사를 위한 중개 또는 대리행위 허용	· 확인 · 불가
D/3	· 생명보험의 국경간 거래 허용	· 1997년 1월부터 생명보험의 국경간 거래 허용
D/4	· 손해보험의 국경간 거래 확대	· 1997년 1월부터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의 국경간 거래 허용
D/5	· 재보험 조기자유화	· 재보험완전자유화 일정을 '98년 4월에서 '97년 4월로 1년 앞당김
D/6	· 부동산취득관련 내·외국보험사업자 차별조치 폐지 · 경제적 수요심사(ENT)폐지 · 외국정부 출자보험회사의 설립제한 폐지 확인 · 외국보험사업자 국내지점의 허가 갱신의무 폐지확인 ·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허용 · 한·미 쌍무협상에 의한 제기준이 다른 OECD회원국에 동등하게 적용되는지 확인 ·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 설치가능 여부 확인	· 외국보험사의 부동산취득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제도를 1995년말 신고제로 전환 · 1997년 1월부터 경제적 수요심사 폐지 및 새로운 허가기준 제정 · 1991년 2월 폐지 확인 · 1995년 6월 폐지확인 · 1998년 4월부터 허용 · 확인 · 확인

자유화항목	OECD 요구사항	우리나라 조치사항
D/6	·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의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을 10억원에서 영업기금의 30%로 변경 ·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립 신청 기각시 해당 사유통보 및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규정 마련 · 외국보험사업자 국내지점 대표자의 국내상주의무 확인 · 합작생보사의 외국인지분 제한조건(외국인지분 49%이상)폐지 · 외국보험사업자의 보험사업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허가여부 결정 및 결정내용의 즉시통보	· 1995년 12월 조치완료 · 1996년 중으로 규정 마련 · 상주의무 있음 · 1996년 5월 폐지 확인 · 내허가 소요기간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결정사항의 즉시통보를 위해 관련규정을 1996년 중에 마련할 예정
기 타	· 국내에서 영위되지 않거나 거부 또는 담보능력 초과물건에대한 자유로운 국경간 거래 허용확인 · 국경간 거래 허용종목에 대한 광고활동 허용 · 국경간 거래 허용종목 및 보험영업, 상품관련 내·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한 동일한 세제혜택 부여 · 외국보험중개인의 국내진출을 '97년부터 허용 · 보험중개인 자격요건관련 원보험과 재보험구분 · 생·손보험회 가입시 내·외국사 동등대우 보장 · 생보사의 개인상해보험 주계약 취급 허용 · 상품개발과정에 있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규정마련을 위한 제도개혁	· 확인 · 관련규정 마련을 통해 허용 · 동일한 세제혜택 부여 · 불가 ·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중개인으로만 구분, 일정자격구비시 겸영가능 · 보장 · 추후 해결방안 모색 · 상품관련규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IV. 保險市場 自由化措置의 豫想效果

OECD의 加入에 따른 우리나라 保險環境變化의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保險仲介人制度의 導入과 海外保險仲介人의 國內進出 許容, 經濟的 需要審査(ENT)條項의 廢止, 國境間 去來의 追加許容, 再保險 早期自由化, 損害査定業 및 保險計理業 對外開放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經濟的 需要審査(ENT)條項의 廢止와 國境間 去來의 追加許容은 外國社業者의 內國保險市場 進入時 支店이나 子會社 등 營業據點을 통한 방식 또는 事業者 本社에서 직접 營業을 하는 방식 모두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內國社와 外國社의 競爭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變化는 우리나라 保險市場이 과거 規制에 의하여 운용되었던 시장으로부터 향후 市場原理에 입각한 公正競爭下에서 운용되는 市場으로 급격히 轉換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經濟的 需要審査(ENT)條項의 폐지, 國境間 去來 追加許容 및 保險仲介人制度의 導入 등을 통하여 保險事業者間의 競爭이 촉진되고 契約者의 權益이 증진됨으로써 우리나라 保險市場은 과거 生産者 爲主의 市場에서 消費者 爲主의 市場으로 급속히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變化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保險產業의 效率性和 國際競爭力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市場參加者들의 경우 市場原理에 입각한 經濟行爲에 있어서 충분한 經驗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事業者間 過當競爭이나 國境間 去來時 詐欺나 不良 海外事業者와의 去來로 인한 保險金 支給不能事態 可能性의 增大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각각의 自由化措置들이 保險市場 및 市場參加者들에 대해 미치는 肯定的인 영향과 否定的인 影響(부작용)을 검토하여 긍정적인 영향은 極大化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加급적 最小化할 수 있도록 향후 政策課題의 焦點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本章에서는 상기의 주요 自由化措置들이 保險市場 및 市場參加者들에 미칠 豫想效果를 검토하기로 한다.

1. 保險仲介人制度의 導入

정부는 그동안 保險業法에 相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시장의 여건미성숙 등으로 인하여 그 導入이 연기되어 온 保險仲介人(insurance broker)制度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1997년 4월 國內 損害保險仲介人 도입을 시작으로 1998년 4월에는 國內外 生命保險仲介人 및 海外損害保險仲介人의 國內進出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保險仲介人제도가 도입되면, 리스크관리, 언더라이팅, 상품 등 보험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중개인들이 계약자의 편에서 보험회사와 가격협상을 하는 등 보험계약을 중개하므로 보험사간의 商品開發, 價格 및 서비스경쟁을 가속화시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販賣組織의 多樣化 및 販賣組織別 效率性 증대로 국내판매조직 및 나아가 보험산업의 先進化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保險仲介人이 契約者의 立場에서 信義誠實의 原則에 따라 보험계약을 중개하도록 하는 데 동 제도 도입방향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保險仲介人은 信賴度, 財務能力, 稅制問題, 協商力 強化 등의 이유로 인하여 法人化・大型化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大型 保險募集組織의 出現이 예상된다. 한편 保險仲介人은 契約者를 위해 최적의 보험상품을 중개하게 되므로 이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商品開發 努力이 촉진될 것이며 계약자의 니드에 부응하는 주문형상품(tailor-made product)의 개발도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保險仲介人은 契約者의 危險管理者로서 효율적 위험관리 및 적절한 보험활용 등을 통하여 保險產業의 效率性과 보험에 대한 認識向上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保險仲介人制度가 정착되면 복잡다기한 보험종사 專門人力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이는 향후 國內保險社의 海外進出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국내의 중개인이 고액기업성 우량물건을 적극적으로 중개하게 될 것이므로 보험사간의 價格引下 및 仲介手数料引上 경쟁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 모집조직의 규모, 전문성, 축적경험(유지율) 등이 외국 중개인에 비하여 영세하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한 판매전문가에 대한 스카웃경쟁 등으로 募集市場의 混亂이 예상되며, 영세한 대리점의 도산 및 회사직급이 축소되는 등 募集組織間 效率

性 競争을 통한 募集市場의 再編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축적된 언더라이팅 경험과 고도의 위험관리기법을 구사하는 외국의 대형보험중개인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보험사에 대한 價格協商力과 고객에 대한 差別化된 서비스제공 등을 통하여 損害保險의 企業性保險과 生命保險의 團體保險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내 보험중개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보험사간의 지나친 價格競争, 手數料 提供競争 등을 부채질하여 保險社의 安定性에 심각한 打撃을 줄 수도 있다. 수입극대화를 노린 중개인의 농간으로 인하여 계약자들이 불필요한 상품조합을 수용하거나 계약자실정에 맞지 않는 수수료 위주의 상품구입이 이루어져 계약자 이익이 침해당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消費者 被害가 발생할 소지도 많다.

<表 7> 保險仲介人制度 導入에 따른 豫想效果

구 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원보험사	· 보험가격, 대고객서비스경쟁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증대 · 신상품개발 촉진 및 모집조직간 경쟁을 통한 새로운 보험수요창출로 영업범위 확대 및 수익성 제고	· 보험사간 지나친 가격 및 수수료 제공경쟁으로 인한 수지악화 · 외국의 대형보험중개인 진입시 보험사에 대한 영향력 증대로 외국사의 시장잠식가능성
재보험사	· 해외 대형중개인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 해외수재 소폭 증가 가능성	· 재보험중개인을 통한 원수사의 해외출재 증가로 내국물건 수재감소
계약자	· 중개인을 통한 최적의 보험상품 구매 가능 · 전문적 위험관리 및 손해사정서비스 수혜 · 계약자니드에 부응하는 주문형 보험상품(tailor-made product) 활성화로 계약자의 효용증대	· 수입극대화를 노린 중개인의 농간으로 불필요한 상품구입을 수용하거나 계약자실정에 맞지 않는 수수료 위주의 상품구입에 따른 피해가능성
모집조직	· 판매조직의 다양화 및 판매조직별 효율성 증대로 모집조직의 선진화 도모	· 모집조직의 혼란 · 영세대리점의 도산

2. 經濟的 需要審査의 廢止

經濟的 需要審査(ENT)는 保險社의 設立許可時 國內保險市場狀況, 國內保險產業發展에의 寄與可能性 및 國內保險產業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市場需要에 부응하는 適正 數의 保險會社만을 許可해 주는 制度로서 外國사 뿐만 아니라 國內보험사 설립시에도 同等하게 適用되어 왔다. 加入協議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보험사 설립기준으로 經濟的 需要審査를 적용하는 根據로서 新設生保社의 심각한 赤字狀態 및 國內保險市場規模에 비해 과다한 保險會社數 등을 설명하였으나 OECD측에서 우리나라 보험회사(생보)의 平均保險料가 OECD 平均에 비해 높고 우리나라보다 平均保險料가 높은 국가에서도 保險社設立과 관련된 法的 制限이나 經濟的 需要審査 適用事例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동 조항의 廢止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동안 經濟的 需要審査를 통해 新規事業者의 進入을 차단함으로써 보험회사의 亂立으로 인한 募集秩序의 혼란을 방지하고 保險契約者를 保護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기존보험사 중심으로 안정적인 보험산업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 제도는 자유로운 市場進入을 制限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입각한 公正한 競爭을 차단하여 서비스의 질이나 가격측면에서 다른 競爭市場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내년부터 保險社 設立基準 중 經濟的 需要審査條項이 廢止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進入이 용이해질 것이나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1980년대 이후 27개의 신설사가 진출하여 있기 때문에 시장의 潛在需要에 비해 供給者가 과다한 상태이고 국내 생보산업의 독특한 판매방식 등을 고려할 때 外國 生保社의 追加進入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支店 및 事務所의 설치만이 허용되고 있는 손해보험의 경우 新規 合作社 또는 子會社 등의 형태로 해외보험사의 국내진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공급자의 수적 증가에 따른 경쟁의 촉진으로 보험사들은 體質改善을 통하여 經營의 效率性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경주할 것이며 계약자 측면에서도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保險料가 引下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원보험사업자나 재보험사업자 모두 競爭深化로 收支가 惡化되어 궁극적으로 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表 8> 經濟的 需要審査 廢止에 따른 豫想效果

구 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보 험 사	· 체질개선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	· 보험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지 악화
계 약 자	· 공급자의 수적증가에 따른 경쟁환경 조성으로 보험료인하 및 대고객서비스 향상	· 보험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지 악화로 보험금지급불능 등의 피해 가능성 증대
모집조직	· 모집조직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모집조직의 효율성 증대	· 전문성이 결여된 영세 대리점의 경쟁력 약화

3. 國境間 去來의 追加許容

외국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 支店 또는 子會社 등의 營業據點을 설립하지 아니하고도 국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國境間 去來(cross-border)가 1997년 1월부터 생명보험 전종목, 손해보험종목 중 장기상해보험, 해외여행보험, 선박보험에 대하여 추가로 허용되게 된다. 이러한 국경간 거래의 추가허용으로 내국보험사업자들은 不特定 多數의 外國保險會社들과 경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經營의 效率性과 國際競爭力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個人保險의 경우 현재 보험계약이 募集人을 통한 거래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간 거래로 인한 국내시장잠식은 단기적으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장기적으로는 모집인을 통한 영업방식의 高費用化에 따라 향후 인터넷 등 情報通信媒體를 활용한 영업방식이 활성화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生命保險 團體保險의 경우 현재 企業貸出과 연계되어 보험가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들의 資本調達이 용이해질수록 外國保險會社와의 국경간 거래 발생가

능성은 커질 것이다.

企業性 損害保險의 경우 주요 대그룹에 속한 계열 손보사들은 기본적인 물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손보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기업들의 고액물건 및 손해율이 낮은 우량물건 등은 국경간 거래의 추가허용에 따라 外國保險會社에 대한 직접부보 또는 해외에 캡티브(captive)사를 설립하여 부보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계열사 소속이 아닌 손보사들이 기업성 보험부문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表 9> 國境間 去來 追加許容에 따른 豫想效果

구 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원보험사	·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경영의 효율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	· 고액기업성물건 및 우량물건의 해외 유출 증가 · 생명보험 단체보험시장의 해외유출 가능성
재보험사	-	· 원보사의 해외재보험사와의 직접거래 또는 재보험중개인을 통한 거래 증가로 인한 수지악화
계 약 자	· 보험료인하 및 대고객서비스의 향상	· 불량 외국보험회사와의 거래로 인한 보험금지급불능사태 발생가능성 · 보험사기단으로부터의 피해 가능성
모집조직	· 인터넷(internet)활용 등 모집방식의 다양화	· 모집인의 고비용화로 인한 기존 방식 쇠퇴

4. 再保險自由化

1997년 4월부터 화재, 특종보험 등 전 종목에 대한 再保險去來가 완전자유화됨에 따라 料率求得協定 및 國內社優先出再制度가 완전 철폐되었다. 요율구득협정이 철폐됨에 따라 國內原受社間의 料率競爭이 심화될 것이다. 특히 보험중개인 제도의 도입으로 손해율이 낮은 高額企業性物件의 料率引下競爭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

면에 불량물건의 경우 引受拒否 또는 料率引上으로 재보험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國內社優先出再制度 폐지와 원수사들의 海外再保險 直去來 또는 再保險仲介人을 통한 海外再保險 去來의 증가로 국내원수사들의 再再保險料 수입이 감소되어 再再保險料 確保를 위한 국내사간의 相互再保險 및 外國社와의 交換再保險(Reciprocity) 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보험거래 자유화의 영향으로 海外 出·受再 去來의 수지역조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海外不良再保險者와의 거래 증가로 인한 保險金 回收不能事態의 발생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한편 그동안 내국시장에서 獨占的 地位를 누려온 大韓再保(株)의 경우 재보험자유화에 따른 協商力 弱化和 大型 外國再保險社와의 競爭深化로 인한 심각한 經營惡化가 우려된다.

<表 10> 再保險自由化에 따른 豫想效果

구 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원보험사	- 요율구득협정 폐지에 따른 국내사간 요율경쟁가속 - 국내사우선출재제도 폐지에 따른재보험료 수입감소 - 재보험 출재채널의 다양화에 따른 협상력의 증가	덤핑요율에 의한 불량 외국재보험사와의 거래가능성 증대 → 보험금 회수지연 또는 회수불능사태 발생가능성 증대
계 약 자	보험료 인하	-
재보험사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	- 협상력 약화와 대형 외국재보험사와의 경쟁심화에 따른 수지악화 - 해외 출·수재거래의 수지역조 심화

5. 損害査定業 및 保險計理業 對外開放

損害査定業 및 保險計理業의 對外開放은 WTO 협상때부터 계속 요구된 사항으로서 그동안 外國人投資制限業種으로 묶여 있었으나 OECD 가입협상을 계기로 1998년 4월부터 同 業種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國內 損害査定 및 保險計理 부문에 外國의 先進保險技法이 도입됨으로써 同 産業이 活性化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규모 資本 및 專門性을 보유한 외국사와 비교할 때 내국손해사정회사 및 보험계리회사의 경우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회사수도 미미하기 때문에 국내시장의 잠식이 우려된다.

向後 料率自由化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要素의 自體算出能力이 부족한 보험사의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보험계리회사에 料率算出을 委託하여 부적정한 要素산출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경영수지가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新危險率을 도입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국내 관련 통계 부족 등으로 자체적인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契約者群別로 세분화된 언더라이팅이 보편화되어 있는 선진국 전문보험계리회사로부터 要素산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한편 계약자의 입장에서 보다 선진화된 양질의 손해사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외부보험계리회사가 객관적이고 독립된 위치에서 계약자의 危險度에 상응한 適正料率을 산출함으로써 賠償要素로 인한 支給不能事態 등과 같은 피해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表 11> 損害査定業 및 保險計理業의 對外開放에 따른 豫想效果

구 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보 험 사	· 적정 要素산출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 · 국내관련통계가 부족한 신위험율을 도입하는 신상품개발 용이	· 손해사정 및 要素산출업무의 대외종속
계 약 자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손해사정 및 要素산출을 통한 소비자 권익증대	-
손해사정회사 및 보험계리회사	·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관련 선진보험기법의 도입 · 내국보험시장에 대한 질적 통계자료 및 정보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자본과 전문성을 보유한 대규모 외국사의 진출로 인한 시장잠식 및 산업기반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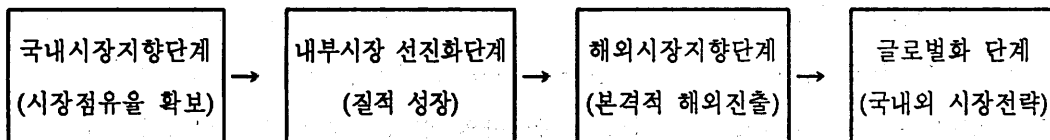
V. 國內 保險產業의 對應方案

本章에서는 保險產業의 發展段階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전개한 후 OECD가입을 계기로 향후 1~2년 사이에 대폭 개방될 우리나라 保險市場의 位置를 우선 점검해 본다. 이러한 시장위치에서 국내보험사들이 변화하는 開放環境에서 현재 어느 정도의 국내시장내 競爭力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對應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어느 정도의 競爭力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구체적 海外營業 및 投資戰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國內保險產業의 位置

보험산업도 일반 제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내부시장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한 성장과정을 거친 후 해외시장을 향해 진출하게 된다. 따라서 保險會社의 國際化水準을 국내 사업규모 및 내용, 해외거점의 유무, 해외영업활동 내용, 국제업무 관련 부서조직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4段階로 구분할 수 있다.

<圖 1> 保險產業의 發展段階



첫째, 國內市場指向段階는 보험사가 國內保險市場에서의 市場占有率 確保 競爭에 주력하는 단계를 뜻한다. 이 단계에서는 국내시장이 꾸준한 양적 성장을 하고 내국사 간의 시장점유율 확보경쟁이 치열한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政府의 強力한 規制와 保護政策에 따라 외국 선진보험사와의 경쟁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國內產業의 內部先進化 段階에서는 국내 보험산업이 어느 정도 양적 성장을

달성하게 됨으로써 外國社의 開放壓力이 거세지고, 政府도 規制를 緩和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내외국사간 경쟁을 통하여 國內産業의 先進化를 추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보험사들이 선진외국사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업무구조를 개선하고 각종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써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保險産業의 先進化도 이루고 內國社의 國際競爭力도 갖추게 되는 단계이다. 그리고 先進國에 情報調査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소 형태의 海外據點을 두게 되며, 본사에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게 된다. 또한 僑胞나 現地進出 國內企業을 주 대상으로 소규모 해외영업이 영위되기도 한다.

셋째, 海外市場 指向段階는 保險仲介 또는 支社設立의 형태로 海外營業을 試圖하는 단계로, 교포나 현지 국내기업외에 現地 國民과 企業을 상대로 積極的인 營業活動을 전개하는 단계이다. 資産運用에 있어서도 國際分散投資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해외투자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해외시장분석과 해외마케팅 전략 등을 전담하는 부서를 국내 본사에 설립하여 社內 他部署와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내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고정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成長보다는 安定에 주력하며, 先進保險技法을 도입·정착시켜 국내외에 선진보험사로서의 기업이미지를 확보하려는 단계이다.

넷째, 글로벌화(globalization) 단계는 2個國 以上の 海外市場에 進出하여 보험영업과 투자활동을 국내처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단계이다. 海外에 子會社를 설립하여 별개의 獨立採算單位(profit center)로 운영하며, 국내 본사는 이들 자회사들간의 조정·통제 기능만 하고 국제업무의 각종 권한을 海外 子會社에 이양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또한 현지 소비자들에게도 성공적으로 국내사의 인식을 확산시킨 단계이기 때문에, 보험영업도 국내보험영업분야의 해외판매형태가 아니라 현지수요에 맞는 新規領域指向을 목표로 하게 된다. 자산운용도 국내자산의 해외운용뿐 아니라 海外資金의 國內受託業務까지로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단계이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1980년대 말까지 국내시장지향단계를 거쳐 현재 내부시장선진화 단계의 말기와 해외시장지향단계의 초기과정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특히 OECD의 가입에 따른 시장의 추가개방으로 국내산업의 내부선진화를 통한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여야 하며 해외시장을 지향하여 해외 분산투자 및 해외영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장기계획에 의한 海外市場調査와 資料蒐集 및 市場分析 등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2. 內國市場에서의 對應方案

가. 競爭力 評價

競爭力은 제도에 의하여 생성되는 內生變數이기 때문에 국가간 제도상의 차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제도하에서의 내국사와 외국사업자와의 경쟁력은 외국제도하에서의 우리나라 보험사업자와 당해국 내국사와의 경쟁력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한 외국사업자에 대한 內國社의 競爭力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업능력측면을 반영하는 收入保險料 占有率과 자산운용능력측면을 반영하는 資產運用收益率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OECD회원국들에서의 외국보험사와 내국사의 경쟁력을 비교·평가하고자 한다.

국제경제학에서 국제간의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방법들 중에는 한나라의 지역별 수출성장에 기초를 둔 지역별 비교우위지수(Comparative Advantage by Countries : CAC)와 발랏사(Balassa)의 현시 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지수)가 있다. 이 가운데 발랏사의 RCA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CA_i = (X_{ki}/X_{wi})/(X_k/X_w) \times 100$$

상기의 식에서 X_{ki} 는 i번째 상품에 대한 특정국 k의 수출액, X_{wi} 는 i번째 상품에 대한 세계 총수출액, X_k 는 특정국 k의 총수출액, X_w 는 세계 총수출액을 나타낸다. 따라서, RCA_i 지수가 100보다 크다면, 특정국 k의 i번째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은 그 국가의 전체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i상품의 국제경쟁력은 전체 상품의 평균비교우위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의 지수를 보험산업에 응용하여 다음과 같은 競爭力指數를 도출하였다.

$$VWI_i = (F_i/T_i)/(\sum F_k/\sum T_k)$$

위의 식에서 F_i 는 i국 시장에서 외국보험사업자가 거수한 總收入保險料, T_i 는 i국의 總收入保險料, $\sum F_k$ 는 OECD 특정 회원국의 국내시장에서 외국보험사업자가 거수한 收入保險料의 總計, $\sum T_k$ 는 OECD 각회원국의 收入保險料의 總計를 나타낸다. 따라서 분자값인 (F_i/T_i) 는 각회원국에서의 외국보험사업자 수보비중을 나타내며 분모값인 $(\sum F_k/\sum T_k)$ 는 OECD 전체 외국보험사업자의 수보비중을 의미한다. 동 지수는 발랏사의 RCA지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OECD회원국은 외국보험사의 진출이 원활하여 하나의 단일보험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위의 VWI 指數는 각 회원국의 보험시장 규모나 외국보험사업자의 영업규모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그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전체 비중에서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 總額比重指數(Value Weighted Index : VWI)의 성격을 갖는 지수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수의 경우 외국보험사업자의 대한 현실적인 진입규제의 존재, 단일화폐단위로의 통일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제치와의 誤差發生의 可能性, 보험시장의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반면 미국, 일본 등 몇몇 거대보험시장이 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의 지수와 병행하여 국가별로 동일한 加重値를 부여한 均等比重指數(Equally Weighted Index : EWI)도 아울러 산출하여 각국의 경쟁력을 비교하였다.

$$EWI_i = \frac{(F_i/T_i)}{\frac{\sum(F_k/T_k)}{n}}$$

위의 식에서 $\sum(F_k/T_k)/n$ 은 OECD 각회원국 외국보험사업자들의 시장점유비중의 합을 회원국수 n으로 나눔으로써 외국보험사업자들이 현지국에서 차지하는 수보비중의 평균치가 되는 것이다. 총액비중지수와 균등비중지수 모두 외국보험사업자의 지수값이 100보다 작을수록 內國社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1) 營業部門

① 分析資料

OECD 각회원국의 국내시장에 진출한 외국보험사에 대한 내국사의 경쟁력을 영업 능력측면을 반영하는 收入保險料占有率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OECD에서 매년 발간하는 「保險統計年鑑(Insurance Statistics Yearbook)」의 OECD회원국별 원수보험료(direct gross premium)기준 시장점유율자료를 이용하였다.

<表 12> OECD 會員國의 域內市場占有率 推移 (원수보험료 기준)

(單位: %)

국가	1990		1991		1992		1993		1994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호 주	2.37	0.91	2.11	0.84	1.81	0.67	2.02	1.28	1.92	1.44
오스트리아	0.40	0.84	0.38	0.83	0.39	0.88	0.44	0.86	0.41	0.88
벨 기 에	0.50	0.94	0.50	0.92	0.52	0.99	0.49	0.92	0.55	0.90
캐 나 다	2.36	1.99	2.41	2.20	1.87	1.95	1.31	1.83	1.70	1.28
덴 마 크	0.39	0.55	0.41	0.48	0.44	0.50	0.46	0.46	0.53	0.48
핀 란 드***	0.97	0.46	0.89	0.41	0.63	0.33	0.06	0.25	0.09	0.27
프 랑 스	5.92	5.27	6.10	4.97	6.81	5.23	7.24	4.96	7.99	5.06
독 일*	5.49	8.12	5.61	8.62	6.44	9.29	6.21	9.28	6.34	9.76
그 리 스**	0.07	0.10	0.08	0.09	0.09	0.10	0.09	0.10	0.09	0.10
아이슬랜드	0.00	0.03	0.00	0.03	0.00	0.03	0.00	0.02	0.00	0.02
아 일 랜 드	0.38	0.26	0.35	0.27	0.30	0.28	0.30	0.25	0.31	0.28
이 태 리	1.16	3.35	1.28	3.45	1.39	3.62	1.21	2.91	1.33	2.85
일 본	30.10	9.88	31.52	10.30	31.86	10.23	34.42	11.86	34.22	12.44
룩셈부르크	0.02	0.05	0.03	0.05	0.02	0.05	0.02	0.05	0.02	0.05
네덜란드*	1.80	1.46	1.82	1.23	1.88	1.44	1.57	1.44	1.58	1.58
뉴질랜드*	0.10	0.17	0.10	0.13	0.09	0.13	0.08	0.09	0.08	0.10
노르웨이	0.30	0.53	0.35	0.48	0.35	0.51	0.28	0.45	0.31	0.44
포르투갈	0.08	0.24	0.10	0.27	0.13	0.31	0.13	0.29	0.14	0.29
스 페 인	0.86	1.89	1.11	1.98	1.08	2.13	1.01	1.78	1.36	1.74
스 웨 덴	1.08	0.84	1.11	0.90	0.99	0.87	0.69	0.78	0.79	0.58
스 위 스	1.64	1.27	1.66	1.21	1.65	1.20	1.62	1.13	1.77	1.21
터 키	0.03	0.11	0.03	0.11	0.03	0.13	0.03	0.17	0.01	0.12
영 국*	9.74	6.42	10.71	6.66	10.49	7.50	9.00	6.54	7.77	6.21
미 국	34.22	54.34	31.35	53.57	30.52	51.19	31.04	51.73	30.41	51.35
한 국	3.50	0.85	3.83	1.01	3.81	1.02	3.63	1.12	3.86	1.31

註: * 순수입보험료기준(net written premium basis). 단 독일 및 노르웨이는 생보만 해당

** 1991년까지는 순수입보험료기준(net written premium basis)

*** 1993년 이후부터는 생보실적에 공적연금의 실적 미포함

資料: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1987-1994, 1996 및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아울러 OECD 회원국별로 自國市場에서의 외국계보험회사⁶⁾ 및 외국보험회사의 지점 및 대리점의 시장점유율자료를 이용하였다. 동 자료에서는 OECD 각회원국 국내시장에 진출한 전체 외국보험사업자(외국계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의 지점 및 대리점 포함)의 총수입보험료(gross premium, 원수보험료+수재보험료)기준 시장점유율과 외국보험회사의 지점 및 대리점의 市場占有率을 생·손보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내관련통계는 보험감독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保險統計年鑑』의 자료를 이용했다.

<表 13> OECD 會員國別 外國保險事業者 市場占有率 推移

(單位: %)

년 도 국 가	1990		1991		1992		1993		1994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호 주	18.86	43.81	22.27	40.70	26.17	58.08	-	38.91	-	37.05
오스트리아	34.01	47.44	36.08	46.89	36.49	48.18	33.82	48.78	37.51	49.25
벨 기 에	-	11.11	-	10.07	-	7.25	-	6.84	-	2.92
캐 나 다	35.29	63.32	34.09	62.33	35.81	64.37	28.72	61.58	33.17	70.50
덴 마 크	9.06	27.18	9.33	27.06	9.55	34.48	7.65	36.74	8.67	22.15
핀 란 드	0.00	0.23	0.00	0.22	0.00	0.23	-	-	0.00	-
프 랑 스	8.15	12.12	-	-	6.66	18.29	-	-	-	-
독 일	12.54	17.66	12.47	13.95	11.43	14.26	11.33	16.29	9.80	7.83
그 리 스	-	-	-	-	-	-	33.00	27.96	-	-
아이슬랜드	0.00	0.00	0.72	3.35	1.64	3.92	3.38	4.11	4.09	0.68
아일랜드	31.17	37.53	32.63	35.30	24.75	34.36	21.95	27.80	23.69	24.86
이 태 리	-	-	-	-	-	-	-	-	1.80	2.80
일 본	2.24	2.86	2.35	3.15	2.48	3.17	2.66	3.16	3.07	3.29
룩셈부르크	-	-	-	-	-	-	-	-	9.75	19.29
네덜란드	24.90	27.42	19.89	20.08	23.30	29.05	22.85	25.85	22.36	23.51
뉴질랜드	-	-	-	-	-	-	-	-	-	-
노르웨이	0.00	15.17	1.73	17.38	2.18	15.72	1.77	16.60	-	-
포르투갈	30.92	13.06	33.28	27.30	27.86	25.72	28.78	12.76	29.35	9.12
스페인	16.35	31.52	17.06	39.12	-	-	23.34	41.29	17.70	32.10
스웨덴	-	-	0.00	-	0.00	-	0.00	-	0.00	-
스위스	2.92	9.83	2.43	9.56	2.35	9.79	2.78	12.22	-	10.89
터 키	0.57	12.54	1.17	13.35	-	12.30	4.88	11.47	5.80	10.01
영 국	5.19	4.84	4.71	4.41	4.48	5.24	2.20	6.25	2.29	6.35
미 국	9.18	7.10	8.19	9.43	12.14	10.04	15.15	10.39	13.41	9.81
한 국	3.03	0.84	3.82	0.62	4.82	0.49	5.79	0.47	6.29	0.44

資料: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1987-1994, 1996 및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 6) 외국계보험회사의 정의는 회원국별로 차이가 있으나,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사의 지분이 50%이상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비율이49%이상인 합작사와 외국사의 현지법인(자회사)을 외국계보험회사로 간주하였다.

② 分析結果

균등비중지수의 경우 <表 13>을 이용하여 정의식에 따라 국가별로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반면, <表 12>와 <表 13>을 이용한 총액비중지수의 값을 구하기 위하여는 정의식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VW_i 를 다음 식으로 변형시켰다.

$$VW_i = (F_i/T_i)/(\sum F_k/\sum T_k) = (F_i/T_i)/[\sum(\frac{F_k}{T_k})(\frac{T_k}{\sum T_k})]$$

위 식에서 F_i/T_i 나 F_k/T_k 의 값은 <表 13>, $T_k/\sum T_k$ 는 <表 12>에서 구할 수 있다.

영업부문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總額比重指數와 均等比重指數에 의하여 수입보험료 측면에서 각국의 比較優位指數를 구한 결과 두 지수에 따른 국가별 순위는 거의 변하지 않는 반면, 균등비중지수의 경우 총액비중지수에 비해 더 많은 수의 국가에서 내국사들이 외국사에 비해 競爭力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액비중지수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市場規模가 큰 국가일수록 그 분모값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의 外國事業者 市場占有率보다 더 낮은 외국사업자 점유율을 갖는 국가들에서만 내국사들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외국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OECD회원국의 單純平均水準보다 낮기 때문에 總額比重指數의 경우 均等比重指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국가들의 수가 작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의 총액비중지수를 강형 경쟁력지수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균등비중지수를 약형 경쟁력지수로 해석할 수 있다.

均等比重指數의 경우 분석대상이 된 24개 OECD회원국 중 1994년을 기준으로 자료분석이 가능한 12개국과 우리나라 중에서 生命保險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이탈리아, 일본, 아이슬랜드, 터키, 덴마크, 독일, 미국이 자국시장에서 전체 외국보험사업자에 비해 내국사들이 競爭力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외국사업자에 비해 내국사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외국사의 비교우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表 14> OECD會員國 外國保險事業者의 收入保險料 均等比重指數 推移(生保)

연 도 국 가	1990	1991	1992	1993	1994
호 주	119.6	155.1	171.8	215.1	241.1
오스트리아	215.7	251.2	239.6	-	-
벨 기 에	-	-	-	-	-
캐 나 다	223.8	237.4	235.1	182.7	213.2
덴 마 크	57.5	65.0	62.7	48.7	55.7
핀 란 드	-	-	-	-	-
프 랑 스	51.7	-	43.7	-	-
독 일	79.5	86.8	75.0	72.1	63.0
그 리 스	-	-	-	209.9	-
아이슬랜드	-	5.0	10.8	21.5	26.3
아 일 랜 드	-	-	-	-	-
이 태 리	-	-	-	-	11.6
일 본	14.2	16.4	16.3	16.9	19.7
룩셈브르크	-	-	-	-	-
네 델 란 드	157.9	138.5	153.0	145.3	143.7
뉴 질 란 드	-	-	-	-	-
노 르 웨 이	-	12.0	14.3	11.3	-
포 르 투 갈	196.1	231.7	182.9	183.1	188.6
스 페 인	103.7	118.8	-	148.5	113.7
스 웨 덴	-	-	-	-	-
스 위 스	18.5	16.9	15.4	17.7	-
터 키	3.6	8.1	-	31.0	37.3
영 국	-	-	-	-	-
미 국	58.2	57.0	79.7	96.4	86.2
한 국	19.2	26.6	31.6	36.8	40.4

損害保險의 경우 자료 1994년을 기준으로 자료분석이 가능한 20개 회원국과 우리나라 중에서 캐나다,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브르크, 스페인,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내국사들이 외국보험회사의 支店 및 代理店에 비해 競爭力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보험회사 지점의 경쟁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쟁력지수도 계속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表 15> OECD 會員國 外國保險會社 支店 및 代理店의 收入保險料 均等比重指數 推移(損保)

연 도 국 가	1990	1991	1992	1993	1994
호 주	143.7	107.5	108.9	93.5	74.6
오스트리아	11.9	12.8	13.9	13.6	2.5
벨 기 에	125.1	140.4	113.4	109.2	46.5
캐 나 다	299.6	357.1	391.6	392.5	429.5
덴 마 크	58.4	24.8	79.6	99.6	54.5
핀 란 드	2.6	3.1	3.6	5.1	7.0
프 랑 스	39.3	42.7	43.0	43.6	21.5
독 일	35.9	42.2	35.5	35.3	24.4
그 리 스	188.72	263.3	-	183.4	163.6
아이슬랜드	-	-	-	-	-
아 일 랜 드	422.6	492.0	537.4	443.7	396.0
이 태 리	45.0	55.5	58.5	58.6	44.6
일 본	30.0	40.3	45.0	45.7	47.2
룩셈부르크	-	-	-	-	307.3
네 델 란 드	71.7	82.8	98.1	92.6	81.4
뉴 질 란 드	347.9	-	-	-	-
노 르 웨 이	14.6	21.0	21.4	23.1	-
포르투갈	86.6	107.5	115.3	122.1	58.5
스 페 인	87.5	105.8	120.3	100.9	106.3
스 웨 덴	-	-	-	-	-
스 위 스	18.2	16.7	17.0	17.1	17.0
터 키	4.7	9.3	1.9	4.8	3.2
영 국	54.5	61.5	82.0	99.8	101.2
미 국	10.2	13.8	13.6	16.0	13.4
한 국	9.5	8.7	7.7	7.5	7.0

한편, 강화된 형태의 경쟁력지수인 總額比重指數를 통하여 살펴 볼 때 生命保險의 경우 199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이태리, 일본, 아이슬랜드, 터키, 덴마크가 자국시장에서 외국보험사업자에 비해 내국사들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16> OECD 會員國 外國保險事業者의 收入保險料 總額比重指數 推移(生保)

연 도 국 가	1990	1991	1992	1993	1994
호 주	227.6	287.6	292.3	350.0	408.0
오스트리아	410.4	466.0	407.6	-	-
벨 기 에	-	-	-	-	-
캐 나 다	425.8	440.3	400.0	297.3	360.8
덴 마 크	109.3	120.5	106.7	79.2	94.3
핀 란 드	-	-	-	-	-
프 랑 스	98.3	-	74.4	-	-
독 일	151.3	161.1	127.7	117.3	106.6
그 리 스	-	-	-	341.6	-
아이슬랜드	-	9.3	18.3	35.0	44.5
아 일 랜 드	-	-	-	-	-
이 태 리	-	-	-	-	19.6
일 본	27.0	30.4	27.7	27.5	33.4
룩셈부르크	-	-	-	-	-
네 델 란 드	300.4	256.9	260.3	236.5	243.2
뉴 질 랜 드	-	-	-	-	-
노 르 웨 이	-	22.3	24.4	18.3	-
포 르 투 갈	373.1	429.8	311.2	297.9	319.3
스 페 인	197.3	220.3	-	241.6	192.5
스 웨 덴	-	-	-	-	-
스 위 스	35.2	31.4	26.3	28.8	-
터 키	6.9	15.1	-	50.5	63.1
영 국	-	-	-	-	-
미 국	110.8	105.8	135.6	156.8	145.9
한 국	37.5	43.6	58.2	65.2	70.1

損害保險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터키, 핀란드, 미국, 스위스, 프랑스, 독일에서 내국사들이 외국보험사의 지점 및 대리점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17> OECD會員國 外國保險會社 支店 및 代理店의 收入保險料 總額比重指數 推移(損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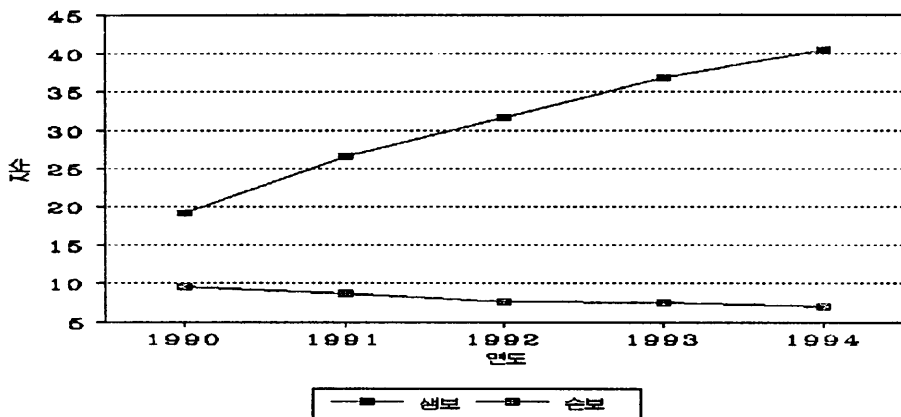
연도 국 가	1990	1991	1992	1993	1994
호 주	437.9	273.3	257.7	217.3	203.6
오스트리아	39.5	32.6	33.0	31.5	7.0
벨 기 에	381.3	357.0	268.4	253.7	127.0
캐 나 다	913.3	908.3	927.1	912.0	1172.9
덴 마 크	178.1	63.1	188.5	231.4	148.8
핀 란 드	7.9	7.8	8.5	11.9	19.1
프 랑 스	119.8	108.5	101.8	101.2	58.7
독 일	109.5	107.4	84.0	82.0	66.6
그 리 스	575.2	669.7	-	426.1	446.8
아일랜드	-	-	-	-	-
아 일 란 드	1288.1	1251.5	1272.2	1031.0	1081.5
이 태 리	137.3	141.1	138.5	136.1	121.8
일 본	91.3	102.5	106.6	106.1	128.8
룩셈부르크	-	-	-	-	839.2
네 델 란 드	218.6	210.6	232.1	215.1	223.3
뉴 질 란 드	1060.5	-	-	-	-
노 르 웨 이	44.6	53.5	50.7	53.8	-
포르투갈	263.9	273.3	272.9	283.7	159.7
스 페 인	266.7	269.1	284.7	234.4	290.2
스 웨 덴	-	-	-	-	-
스 위 스	55.6	42.5	40.4	39.7	46.6
터 키	14.4	23.8	4.4	11.1	8.7
영 국	166.1	156.3	194.0	231.8	276.3
미 국	31.2	35.1	32.2	37.1	36.5
한 국	11.9	8.8	6.9	6.6	6.1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영업부문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 활용된 收入保險料部門에서는 생·손보 모두 내국사가 외국보험사업자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보험사업자가 내국보험사와는 달리 외형보다는 內實爲主의 經營戰略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입보험료가 적은 保障性保險 판매에 주력하고 있고, 보험상품 판매에 있어 緣故募集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외국보험사업자의 연고성이 취약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비교우위지수 추이를 <圖 2>와 <圖 3>을 통하여 살펴 볼 때, 생보의 경우 그 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내국보험산업의 比較優位가 OECD회원국들과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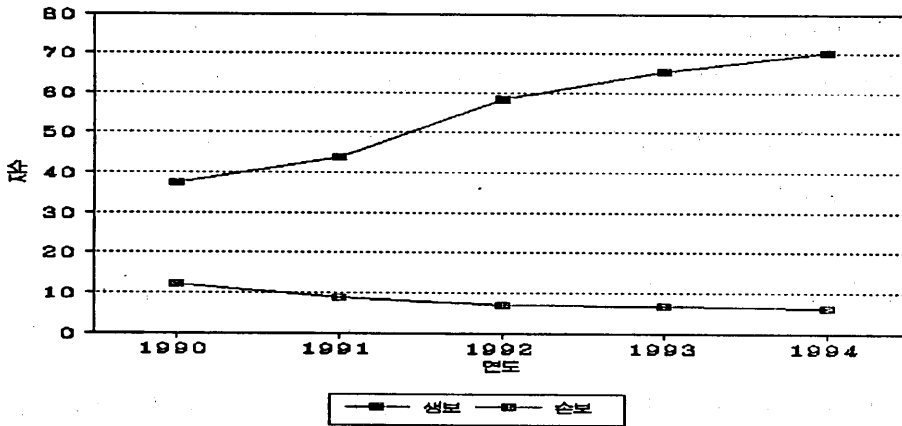
하여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총액비중지수로 살펴 볼 때 향후 수년내에 외국사의 점유율이 OECD의 가중평균치에 근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損保産業의 경우,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보험사의 비교우위지수가 10이내이고 최근에 이르러 계속 하향하는 추세로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사의 경쟁력은 OECD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연구대상 연도인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동안 우리나라 손보산업이 주로 自動車保險市場과 長期家計性保險市場의 급신장에 따라 절대규모가 급성장했으나 외국사들은 損害率이 높아 收益性이 없었던 자동차 및 장기가계성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은 결과 때문이다. 1995년 8월 自動車保險料率引上을 계기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외국사들도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경제적 수요심사조항의 철폐로 외국보험사의 新規市場進出이 늘어날 것이며, 또한 국경간 거래의 확대와 보험중개인제도 도입 등으로 외국사들은 企業性物件을 중심으로 營業範圍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는 외국보험사의 비교우위지수가 급격히 상승하리라 전망된다.

<圖 2> 우리나라 外國保險事業者의 收入保險料 均等比重指數(EWI) 推移



<圖 3> 우리나라 外國保險事業者의 收入保險料 總額比重指數(VWI) 推移



2) 資産運用部門

① 分析資料

OECD 保險統計年鑑은 運用資産을 不動産, 모기지 貸出, 株式, 債券, 一般貸出, 其他投資라는 6가지 투자항목으로 구분하여 내국사, 외국계보험회사, 외국사의 지점 및 대리점의 投資金額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收入保險料와 달리 資産運用部門의 경우 OECD 보험통계연감에 누락 또는 내·외국계보험회사의 구분이 되지 않은 국가들이 많은 관계로 분석대상이 된 국가는 7개국으로 한정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運用資産을 OECD 保險統計年鑑의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산출하였다.

특기할 점은 우리나라에 비해 분석대상이 된 7개국 중 포르투갈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내국사, 외국계보험회사 및 외국사의 지점 및 대리점 구분없이 債券投資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내국사보다는 외국계보험회사와 특히 외국사의 지점 및 대리점의 債券投資比重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OECD회원국에서 채권투자에 대한 投資限度가 없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운용자산이 소규모인 외국계보험회사와 외국사의 지점 및 대리점의 경우 債券投資를 통한 安定性과 收益性을

더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資産運用收益率은 IMF가 발간하는 IFS(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를 이용하여 不動産의 경우 消費者 物價上昇率, 모계지 貸出 및 一般貸出의 경우 貸出利率, 株式의 경우 綜合株價 收益率, 債券의 경우 政府長期債券의 收益率을 각 자산들에 대한 수익율로 평가하여 각국의 내국사, 외국계보험회사, 외국사의 지점 및 대리점 별로 산출하였다.

$$\begin{aligned} \text{資産運用收益率} = & \text{不動産의 比重} \times \text{物價上昇率} + \text{貸出의 比重} \times \text{貸出利率} \\ & + \text{株式의 比重} \times \text{株價收益率} + \text{債券의 比重} \times \text{債券收益率} \end{aligned}$$

OECD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항목중 其他投資의 경우 그 구체적 투자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산운용수익율을 구하는 데 있어서 동 항목은 배제하였다. 한편, 모계지 貸出 및 一般貸出의 경우 각각의 이자율 데이터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항목으로 통일하여 평가하였다. 그 이유는 모계지 貸出의 경우 長期貸出의 성격을 지니므로 貸出의 早期償還 가능성에 의한 자산운용상의 위험과 貸出期間의 長期化에 따른 기간프리미엄 등으로 인하여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으나, 一般貸出의 경우 不動産을 담보로 하는 모계지 貸出과 달리 信用貸出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債務不履行 危險(default risk)에 따른 이자율에 있어서의 가산치를 감안하면 이들 두 값이 유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각국의 수익을 평가에 있어서 海外投資問題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외투자에 따른 수익율을 구하기 곤란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해외투자부분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內國資産에 투자된 것만을 대상으로 그 수익율을 계산하였다. 株式에 있어서도 配當所得은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각국별 자료의 입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配當所得이 株式運用收益率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여도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不動産의 收益率을 반드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구분없이 物價上昇率로 대체될 수 있는가 하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이러한 세부적인 자료 역시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의 공식에 의존하여 資産運用收益率을 평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공표되고 있는 資産運用收益率을 직접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 不動産保有收益率과 같은 것이 구입당시의 買入價로 표시되어 있어 그 수익율이 간안되지 않는 등 다른 국가와의 會計基準상의 문제로 인하여 다른 나라의 자산운용수익을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수익율을 구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 구한 각국별 자산운용수익율은 실제 공표된 수익율과 차이가 날 수 있다.<附錄 4 및 5 參照>

② 分析結果

資産運用部門의 경우 어느 국가가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했는지 국가별로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국별 자산운용과 관련한 모든 여건이 동일해야 하나 이러한 환경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安定性, 收益性, 流動性이라는 保險資産運用의 基本原則을 실질적으로 적용·규제하는 데 있어서 각국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로 投資對象, 投資限度 및 資金調達에 대한 規制가 상이하다는 점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율이나 資産價格의 變動性, 시장에서의 資産價格 등에 대한 規制, 시장의 開放程度에 따른 國家別 資本의 移動性 정도 등 資産市場의 環境的 與件, 市場參加者의 選好度, 債務不履行危險, 資産評價原則 등 국가별로 제반 환경도 서로 다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총액비중지수의 경우 제반 환경이 다른 국가들의 수익율을 아무런 여과없이 합산하기 때문에 그 지수가 주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아래 均등비중지수에 의한 競爭力指數를 산출하였다.

$$EWM_i = \frac{(F_i/T_i)}{\frac{\sum(F_k/T_k)}{n}}$$

위의 식에서 $\sum(F_k/T_k)/n$ 은 OECD 각 회원국의 내국사 대비 외국계보험회사나 외국사의 지점 및 대리점의 資産運用收益率 비율을 더하여 회원국 수로 나누어 줌으로써 외국보험사업자가 각 현지국의 내국사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자산을 얼마만큼 효

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나타낸다. 균등비중지수의 경우 각국내에서 외국사업자와 내국사의 수익율의 비율을 구하였기 때문에 상기 언급한 국가별 제반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동일한 환경하에서 내국사와 대비한 외국사업자의 效率의 資産運用의 程度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均等比重指數를 산출해 본 결과 생명보험의 경우 1994년을 기준으로 미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일본이 외국계보험회사에 비해 내국사가 競爭力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보험사의 지점 및 대리점에 대하여는 미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의 내국사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계보험회사와 외국보험회사의 지점 및 대리점의 比較優位가 내국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表 18> OECD 會員國 外國系保險會社, 外國保險會社의 支店 및 代理店
資産運用收益率 均等比重指數 推移(生保)

년 도 국 가	1990		1991		1992		1993		1994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오스트리아	97.9	83.1	99.7	78	109.8	97.2	93.8	73.2	93.2	-
덴 마 크	106.4	-	109.5	83.2	115.4	102.8	105	125.7	103.7	102.5
네 덜 란 드	100.1	77.4	100	75.6	98.7	77	93.4	93.7	95.8	90.2
포 르 투 갈	40.2	165.1	37.7	233	21.1	155.5	97.7	94.2	108.1	129.3
캐 나 다	104.4	76	107.8	73.8	106.6	85.7	103.3	97.4	103.9	89.4
미 국	96.3	79.2	98.1	73	99.6	74.5	90.7	83.5	93.1	74
일 본	115.5	102	111.4	82.4	123.2	87.5	111	103.7	99.4	85.6
한 국	138.9	117.1	136.1	100.1	126	119.8	105.1	134.1	103.1	129.1

損害保險의 경우 덴마크,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외국계보험회사에 비해 내국사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보험사의 지점 및 대리점에 대하여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미국, 일본이 자산운용수익율면에서 내국사가 競爭力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내국사보다 외국사의 지점 및 대리점의 자산운용상의 比較優位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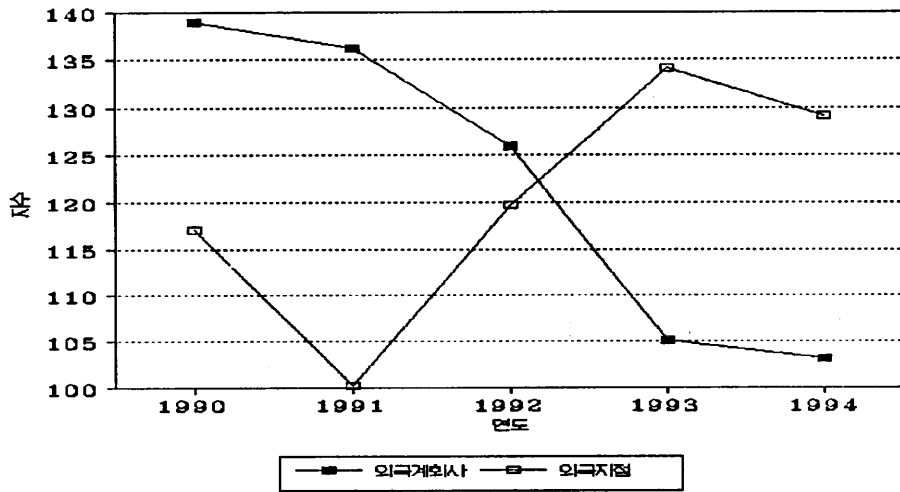
〈表 19〉 OECD 會員國 外國系保險會社, 外國保險會社の 支店 및 代理店
資産運用收益率 均等比重指數 推移(損保)

연 도 국 가	1990		1991		1992		1993		1994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오스트리아	91.5	115.5	101.9	109.1	123.4	147.3	110	134.9	114.2	136.8
덴 마 크	113	-	133.1	-	104.9	-	86.8	-	60.7	-
네덜란드	78.4	79.7	91.8	80.6	78.8	64.9	83.5	70.6	96.4	79.8
포르투갈	131.1	60.3	67.4	74.3	69.9	70.8	83.4	58	81.1	61
캐 나 다	80.8	104.6	89.5	105.8	105.4	113.1	112.7	122.3	107.4	107.2
미 국	81.5	88.1	94.7	88.9	100.6	86.3	97.6	90.5	100.7	88.5
일 본	123.7	118.2	122	106.7	116.9	-	126.4	-	139.5	97
한 국	-	137.5	-	134.6	-	117.6	-	123.6	-	1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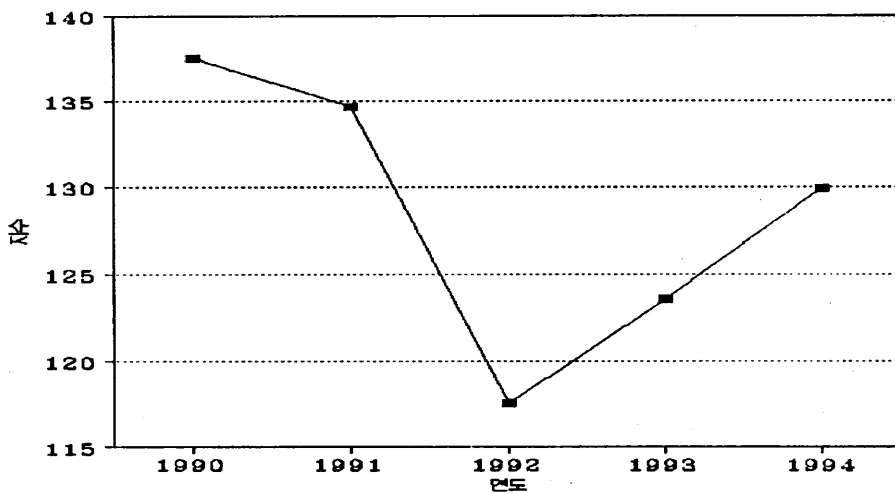
이러한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이 과거 外形爲主의 營業이 강조되어 수입보험료가 단기간에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만성적인 資金의 超過需要現狀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자산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계보험회사나 외국사의 지점 및 대리점에 비해 내국사의 투자비중이 큰 부동산과 주식이 1990년대 들어서 不動産市場의 안정 및 전반적인 株式市場의 침체에 따라 내국사의 수익율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점도 함께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 5년간의 표본을 통해 볼 때 資金의 超過需要現狀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측면에서의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자산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히 보험자산의 長期的인 特性을 고려하여 短期實績爲主의 자산운용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자산운용의 이면에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안고 있는 높은 解約率이라는 고질적인 병폐로 인하여 현·예금의 보유비중이 높다든지 또는 長期債券市場이 취약하다는 등 보험자산운용상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나 단기실적에 집착하는 경영자의 마인드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圖 4> 우리나라 外國系保險會社 및 外國保險會社의 支店 資産運用收益率 均等比重指數 推移(生保)



<圖 5> 우리나라 外國保險會社 支店の 資産運用收益率 均等比重指數 推移(損保)



단기실적위주의 자산운용전략은 規制金利(固定金利)시대와 비교하여 金利自由化(變動金利)시대에서는 보험사에게 자산운용상 더 큰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다. 금리자유화란 시장의 여건에 따라 금리가 변동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資産/負債에 대한 綜合管理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기적인 자산운용전략은 金利危險(interest rate risk)과 再投資危險(reinvestment risk)을 안고 있다. 한편, 최근들어 생명보험의 解約率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이나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個人年金의 도입에 따라 장기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점은 보험사들의 부채 듀레이션이 더욱 장기화됐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런 변화없이 과거와 같은 단기실적위주의 자산운용전략은 보험사 스스로가 더 큰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資産/負債管理에 바탕을 둔 효율적인 자산운용기법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보험사의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 및 한도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아울러 보험사업자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보다 신장시킬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對應方案

1) 營業部門

기존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外國事業者에 대한 進入規制는 내국사의 시장점유율에 양(+)의 효과가 있는 반면, 國內産業保護의 逆作用으로 기진출 외국사업자에 비하여 내국사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음(-)의 효과도 있어 이 두 효과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결국 內國市場 保護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따라서 OECD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보험회사들은 이제 政策的인 配慮에만 매달려 개방화·자유화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市場環境變化를 정확히 분석하여 이에 걸맞는 經營

7) 자세한 내용은 조강필, 정영철, 「OECD가입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고찰」, 「보험조사월보」, 1996년 7월호 참조.

합리화와 生産性 向上 등을 통한 體質強化 노력을 해야만 한다. 종래와 같이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던 시대에는 거래선 확보와 부수서비스 제공 등의 판매전략에만 치중하였으나 OECD가입에 따른 개방화·자유화시대에 있어서는 綜合的인 保險마케팅戰略(insurance marketing strategy)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한 공정한 경쟁환경하에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새로운 경쟁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데 국내보험사의 향후 成敗가 달려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영업전략으로는 첫째, 商品戰略(product strategy)으로서 OECD가입에 따른 경제적 수요심사의 폐지와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 국경간 거래의 추가허용 등 시장개방조치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험가격자유화 상황하에서는 消費者를 危險群과 特性에 따라 細分化한 후 각 소비자 그룹별로 그들의 구미에 맞는 매력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한 상품군에서도 控除額(deductable)과 補償限度額(limit)을 소비자가 구미에 따라 신축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商品의 多樣化를 이루어야 한다. 經濟發展에 따른 새로운 保險需要 變化와 그에 따른 保險商品 開發도 선진국 경험을 참고하여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企業性保險을 중심으로 주문형(tailor-made)방식의 패키지商品도 개발해야 외국사와의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행과 같이 모든 보험사가 모든 보험종목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保險種目別 또는 消費者 特性別로 主攻擊市場(target market)을 설정하여 해당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상품에 特化하는 戰略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小型社의 경우, 특정보험종목, 특정지역, 특정계층 소비자에 特化하는 戰略과 틈새市場戰略(niche market strategy)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價格戰略(price strategy)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야 하므로, 가격자유화의 진전 단계에 따라 언더라이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먼저 각 보험사는 언더라이팅 哲學을 수립해야 한다. 原價에 基準하여 안정적 언더라이팅을 할 것인가, cash flow underwriting을 위주로 할 것인가, 損害査定에 기초한 언더라이팅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여 이에 맞는 細部戰略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상품전략과 가격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損害率 管理, 언더라이팅 技法 및 保險料 產出 등에 대한 專門家를 충분히 確保하고, 시스템(system)도 構築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에 대한 정보와 각종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하여야 과학적 상품개발과 효율산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 부문의 투자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販賣戰略(distribution strategy)으로, 自社 商品の 효율적인 판매를 위한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하는 것과 판매에 따른 附隨的인 對顧客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 販賣戰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국내 보험회사들은 損保社들의 경우 同一系列(group)내의 기업물건 위주의, 또한 生保社들의 경우 모집인의 개인적 친분관계인 위주의 연고중심 거래선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市場開放과 價格自由化가 이루어지면 가격과 상품이 회사별로 다양화되기 때문에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損保産業의 경우, 199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獨立代理店制度和 1997년 4월 保險仲介人制度의 도입에 따라 會社直撥에 의존하던 企業性物件이 선진국의 예처럼 獨立代理店이나 보험중개인 등으로 많이 이양될 것이다. 美國의 경우 기업성보험의 대부분을 독립대리점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 하겠다.

<表 20> 美國 獨立代理店の 企業性保險 募集現況

(單位: %)

구 분	재산 및 배상책임	상 용 차	선 박	상용종합보험
점 유 율	59.3	81.2	94.8	82.2

따라서 보험사들은 商品特性에 따라 募集組織別로 專門化를 달리하는 전략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會社直撥, 獨立代理店, 보험중개인 중 효과적인 판매조직이 保險種目 特性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⁸⁾, 美國에서는 會社直撥方式은 家計性保險(personal lines)에 유리하고, 특히 가계성이나 기업성 중 하나에 특화하는 것이 비용절감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獨立代理店の 경우 企業性保險(commercial lines)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매

8) Hogan, Arthur, Peruvemba, Satish and Robert Witt, "The Cost Structure of Distribution Systems in the U.S P/L Insurance Market,"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April, 1995.

조직임이 판명되었다. 이는 미국의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시장에도 같은 결과를 줄 것이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保險商品에 따라 販賣組織을 特化해야 한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英國에서는 전체 손해보험 판매의 54%와 기업성 물건의 76%를 보험중개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조직의 보험중개인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국가별로 특정판매조직 의존도가 서로 다른 것이 사실이나, 어느 시장이건 보험종목 및 상품별로 효율적인 販賣組織은 존재하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募集組織別 專門化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生保商品 등 家計性保險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통신·우편판매 등의 DM(Direct Marketing)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銀行에서의 保險商品 窓口販賣 방식(bancassurance)도 정착단계이므로 이들 방식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대응방안도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우선 자사의 직급모집담당자가 중개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대기업 거래선이 기관중개인(inhouse-broker)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계속 비즈니스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적극적 대처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기존 代理店의 大型化와 專門化를 유도하고, 專屬代理店과 募集人에 대한 教育을 강화하여 개인중개인제도 도입시 이들의 家計性 保險市場 浸透에 대비하여야 한다.

價格自由化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機會費用을 많이 지불하게 될 것이므로, 各社 販賣組織은 自社 商品뿐 아니라 他社 商品 및 價格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여 고객의 기회비용을 덜어주는 對顧客서비스를 해야만 효과적으로 대 고객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社에서 自社와 他社の 상품·가격 및 고객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관리하여 DB를 구축한 후 각 대리점에 네트워크(network)를 연결하여 신속히 공급하여 주는 시스템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販賣促進戰略(promotion strategy)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우선 一般國民의 保險商品과 保險會社에 대한 否定的인 認識을 전환하기 위한 制度마련과 弘報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保險約款을 明瞭化하여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업계의 공동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情報公示制度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 및 가격과 재무건전성 등을 충분히 비교하고 이해한 후에 보험구입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각 보험사별로는 對顧客서비스 向上을 통한 이미지 提高 努力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우량고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優良集團에게 價格引下·附隨서비스 제공을 한다든가 물건이 큰 고객에 대해서는 保險料 引下(quantity discount)의 혜택을 주는 등 가격자유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해진 전략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경우 효과적인 촉진활동이 될 것이다. 특히 대 고객서비스 경험이 많은 외국사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구매를 하는 企業性保險을 중심으로 危險管理 등의 부수서비스를 제공하며 접근하는 경우 내국사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므로 기업성보험의 대 고객서비스 향상에 특히 힘써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對消費者 保險認識 提高를 위해 保險分爭을 해결하는 全擔部署를 사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資産運用部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內國市場에서 우리나라 保險產業의 資産運用能力은 외국사들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가격자유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국사와 외국사와의 수익율차이가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나, 가격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수익율의 차이에 따라 배당액이나 보험가격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資産運用能力은 결국 그 기업의 營業成敗를 좌우하게 된다⁹⁾. 따라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외국사와의 수익율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9) 個人年金市場과 같이 은행 및 투신권과 서로 공유하는 시장의 예를 통해 볼 때 收益率의 차이는 전체 보험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 미국의 경우 은행과 보험사가 먼저 선점했던 기업연금시장을 수익율의 격차로 인하여 투신과 증권에 빼앗겼던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개인연금과 같은 시장에서 수익율의 차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자금이 대거 이동하게 되는 價値移動(value migration)現狀을 경험할 危險性이 상존하고 있다.

최고경영자의 경우 보험이 갖고 있는 장기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재인식함으로써 현행과 같은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마인드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 전문가의 스카웃 또는 기존인력의 해외 파견교육 등을 통하여 先進資産運用技法의 습득·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投信業 進出이 허용되어 있는 보험선진국들의 경우 投信子會社와의 긴밀한 業務協助關係를 바탕으로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의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의 투신업 진출이 금지되어 있어 자산운용상의 노하우를 습득하는데 限界가 있다. 이러한 노하우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보험사업자와 국내보험사와의 자산운용수익율의 차이로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향후 그 차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투신업의 진출이 허용되어 있는 국가의 보험회사와 資産運用收益率 競爭을 위하여는 국내보험사의 투신업 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海外市場에서의 對應方案

가. 競爭力 評價

1) 營業部門

보험산업의 國際化는 보험선진국인 OECD회원국들의 사례를 통해 볼 때 海外投資와 保險營業이라는 두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 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보험료측면에서 세계 6위라는 국제적 위상과 달리 해외진출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사의 해외진출은 1966년에 大韓再保險公社가 월남에 사무소를 개설하며 시작된 이래, 1970년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함께 선진기술습득, 보험전문가 양성 및 선진보험시장의 연구조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해외진출이 이루어졌다. 1996

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해외진출은 現地法人, 支店, 合作投資 및 駐在事務所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총7개국에 11개의 현지법인과 12개의 주재사무소가 진출해 있다. 한편, 손해보험의 경우 총9개국에 3개의 현지법인, 6개의 지점, 6개의 합작투자, 30개의 주재사무소가 진출해 있다.

<表 21> 우리나라 保險會社의 海外進出 現況(1996年 3月末 現在)

(單位: 개)

진 출 형 태	생 명 보 험	손 해 보 험
현 지 법 인	11	3
지 점	0	6
합 작 투 자	0	6
주 재 사 무 소	12	30

생명보험의 경우 주로 租稅逃避(tax heaven) 地域에 서류상의 기업(paper company)형태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보험영업보다는 유가증권이나 부동산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주재사무소의 역할은 정보수집이 주목적인 바 우리나라는 아직도 해외시장공략에 있어서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생명보험보다 해외진출형태가 다양하며 소규모이기는 하나 원보험 영업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1995年度末 기준으로 國內 損保社 해외영업실적에 따르면, 408억원의 원수보험료 실적을 기록하여 국내 총영업규모의 약 0.4%를 차지하였다.

<表 22> 損害保險 海外營業實績 推移

(單位: 백만,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금 액	11,575	19,003	24,923	33,871	39,198	40,832
비 중	0.3	0.4	0.4	0.5	0.5	0.4

註: 비중 = 해외원보험수입보험료/원보험 총수입보험료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규모의 영세성은 다국적보험기업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美國의 경우 19世紀 後半부터 시작된 損保社의 海外進出은 1991年 현재 500個를 넘고 있으며, 해외영업규모도 1985년과 비교하여 약 2배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해외진출 대형보험사는 총수입보험료의 10~16%를 해외에서 거수하고 있고, AIG의 경우에는 총보험료의 40%를 해외에서 거수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도 1991년 현재 100개 이상의 해외영업거점을 통하여 1,300억 달러의 영업 및 투자수익을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는 1985년 대비 약 2.5배에 해당한다.

<表 23> 美國 保險會社の 海外進出 現況

(單位: 백만\$, 개)

구 분		1985	1987	1989	1990	1991
생명보험	회 사 수	87	86	87	109	106
	영업·투자수익	56,000	78,000	111,000	119,000	130,000
	총 자 산	213,000	286,000	334,000	415,000	451,000
손해보험	회 사 수	530	545	536	518	507
	영업·투자수익	123,000	192,000	204,000	229,000	233,000
	총 자 산	351,000	518,000	607,000	701,000	713,000
합 계	회 사 수	617	631	623	627	613
	영업·투자수익	179,000	270,000	315,000	348,000	362,000
	총 자 산	564,000	804,000	941,000	1,116,000	1,164,000

註: 1. 회사수는 미국인이 최소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

2. 영업·투자수익은 보험영업, 투자 및 기타수익을 합한 것임.

資料: U. 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 S. Direct Investment Abroad*, 1994

英國의 경우에는 損保社들의 海外進出 역사는 1700年代 中盤부터 시작되었다. 1994년 기준으로 영국 손보산업의 총수입보험료중 38.3%가 海外營業으로부터 거수한 것이다. 영국의 손보사들은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 시장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가 등에도 광범위하게 진출하고 있다. 또한 영국계 보험회사뿐 아니라 保險仲介人도 적극적으로 해외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表 24> 英國 保險會社의 海外營業 現況

(單位: 백만 £,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생 보	수입보험료	6,597	7,845	9,188	9,365	10,822
	비 중	16.4	16.5	17.5	16.8	20.0
손 보	수입보험료	8,205	8,489	9,860	11,079	12,010
	비 중	37.5	36.4	37.7	37.4	38.3

資料: Tillinghast-Towers Perrin, *Insurance Pocket Book*, 1996.

多國籍保險企業戰略을 구사하는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해외영업은 유아적인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보험사가 해외시장진출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국내에서의 充分한 成長機會가 存在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지만, 外國市場에 대한 知識不足, 海外進出 專門家 不足, 海外制度・規制에 대한 情報不足 및 文化/言語問題와 換率變動問題 등의 管理능력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資産運用部門

우리나라 보험사의 海外投資規模는 1996년 8월말 현재 생보사의 경우 8개사가 약 1,959억원으로서 運用자산대비 약 0.33% 이며 손보사의 경우는 6개사가 약 316억원으로서 運用자산대비 0.49% 수준이다. 생·손보 전체로는 약 2,275억원으로서 運用자산 대비 약 0.3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投資方法도 債券投資에만 국한되거나 株式投資를 하는 경우에도 海外 直接去來를 통한 투자형태보다는 주로 投資基金에 가입하여 運用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규모에 있어서도 運用자산에 대비하여 봤을 때 OECD회원국들의 해외투자규모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表 25> 우리나라 保險會社의 海外有價證券投資 現況(1996年 8月末 現在)

(單位: 백만원, %)

회 사	구 분	해외유가증권투자(A)	운용자산(B)	비중(A/B)
생 명 보 험	A	107,352	10,064,163	1.07
	B	5,348	3,413,825	0.16
	C	64,939	24,379,834	0.27
	D	3,457	3,221,828	0.11
	E	2,458	14,599,441	0.02
	F	7,420	2,076,872	0.36
	G	4,884	1,026,262	0.48
	H	80	1,135,486	0.01
	소계	195,938	59,917,711	0.33
손 해 보 험	I	815	350,298	0.23
	J	1,752	610,562	0.29
	K	2,183	270,695	0.81
	L	11,728	2,513,317	0.47
	M	7,549	1,408,222	0.54
	N	7,622	1,258,488	0.61
	소계	31,650	6,411,581	0.49
합계		227,588	66,329,292	0.34

OECD 『保險統計年鑑』(1996)상에 海外投資와 內國投資가 구분되어 있는 OECD 회원국들의 海外投資比率을 살펴보면 과거 6개년 동안 운용자산중 생보는 평균 9.4%를, 손보는 11.4%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생보의 경우 株式 및 債券에 거의 동일한 비중을 두고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반면, 損保의 경우 債券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았다. 그 이유로는 손보자산의 성격상 생보보다 상대적으로 短期資金을 운용하기 때문에 安定性和 流動性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 보험사의 경우 해외투자에 있어서 주로 펀드의 가입에 의한 間接投資나 債券投資에만 국한되어 있는 반면, OECD회원국 보험사들의 경우 不動産 및 貸出에도 일정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사에 적합한 海外投資戰略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表 26> OECD 會員國 保險會社의 平均海外投資 및 資産運用對象別 比重
(最近 1989~1994 6個年 平均)

구 분	해외투자비중	부동산	대 출	주 식	채 권
생 명 보 험	9.4	6.50	7.37	43.40	48.82
손 해 보 험	11.4	2.46	4.07	34.17	60.23

註: 생명보험은 호주,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일본, 영국의 6개국,
손해보험은 호주,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의 5개국 평균.

資料: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1987-1994*, 1996.

總運用資産 對比 海外運用資産의 規模나 運用對象을 통하여 OECD회원국들의 해외에서의 자산운용능력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해외영업 능력과 마찬가지로 해외투자시 필연적으로 극복해야 할 外國金融市場 및 관련규제 등에 대한 情報와 海外 資産運用專門家가 不足한 실정이며, 換率變動, 投資對象國家危險(country risk)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관리능력도 OECD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對應方案

1) 營業部門

주요 선진국 保險社의 海外進出 目的 및 戰略은 자국 보험시장 여건, 해당 보험사의 발전단계 및 경영능력과 진출대상국의 금융 및 보험관련제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多國籍 保險企業 戰略'으로 전세계에서 활동적으로 현지인 상대 보험영업을 영위하는 방식과 일본처럼 海外 投融資 목적으로 진출하거나 현지의 自國 企業中心으로 제한적 해외보험영업을 영위하는 방식 등 국가별로 해외진출 전략은 상이하다.

한편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의하면, 1996년까지 金融서비스部門의 多者間協商이 계속될 것이므로 협상결과에 따라 保險産業의 國際交易도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¹⁰⁾ 특히 GATS에서는 각 회원국들이 外國社에 대한 非差別的이고 透明性 높은 規制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자회사 또는 지점을 통한 외국 보험사의 各 會員國 市場 進出 許容基準과 진출시의 內國民對偶에 대한 규제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 보험사들이 보험영업 또는 투자목적의 진출전략을 세워 후진국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것이다.

따라서 海外에 進出하려는 先進國 保險社들은 자신의 실정에 맞고 진출대상국 특성에 부합되는 海外進出戰略을 수립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으리라는 판단이다.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선진국 보험사들의 해외진출 전략을 깊이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國際化 戰略이 어떤 것인지 연구하고 토론하여 바람직한 方向設定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진출 경험이 많은 外國社의 事例와 그들의 最近 動向에 관한 연구는 국내 보험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는 판단이다.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수출입 등 무역업무 및 서비스의 교류 등 국내 기업이나 국민들의 國際交流에 수반되는 각종 保險去來를 중심으로 主要 貿易對象國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야 한다. 定着 初期에는 國內의 進出企業이나 僑胞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점차 현지사업과 현지인에 정착하는 段階的 接近方式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정확한 情報蒐集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해외진출 수년전부터 사무소 형태 설립 등으로 치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매력있는 대상시장으로는 中國과 中南美 등의 교역 활성화 지역과 동남아시아·인도 등 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에 교두보확보를 위한 진출과 保險技法을 습득할 수 있는 先進國 市場進出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방경제체제로 전환중인 동유럽국가들의 진출도 고려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2) 資産運用部門

이론적으로는 國際分散投資(international portfolio diversification)가 매우 설득력을

10) Woodrow, R. Brian, "Insurance Services in the UR Services Negotiations : An Overview and Assessment of the Final Agreement,"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January, 1995.

지니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970년대말까지 국제적으로 海外投資는 小規模로만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유로는 각 국별로 資本移動 및 해외투자에 관한 規制가 매우 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OECD를 주축으로 선진국들 사이에 자본이동 및 해외투자에 대한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재 이들 국가간에 자본이동 및 해외투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 非OECD國家들로도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OECD가입에 따라 外國資本의 국내유입과 국내보험사들의 海外投資에 대한 規制緩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므로 향후 보험사의 효율적 자산운용 차원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특히, 향후 국내 시장에서의 低金利基調 정착, OECD가입에 따른 충격흡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經濟的 混亂,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되는 핫머니의 금융시장 교란 가능성, 이에 따른 금리 및 주가의 변동폭 증대 등과 같은 국내시장의 문제는 보험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투자의 실질적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1974년~1993년 까지의 우리나라와 G5(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株價收益率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우선 각국의 株式平均收益率과 標準偏差를 구해 보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수익율과 편차는 절대값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편, 단위수익율당 위험을 나타내는 變動係數는 미국·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이며 영국보다는 높으나 독일·프랑스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株式市場의 경우 단위당 수익을 대비 投資危險이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表 27> 各國의 株式平均收益率과 標準偏差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평균수익율(%)	16.7	8.9	10.6	13.9	7.8	11.1
표준편차(%)	29.3	14.9	17.3	10.9	18.0	24.1
변동계수	1.75	1.67	1.63	0.78	2.31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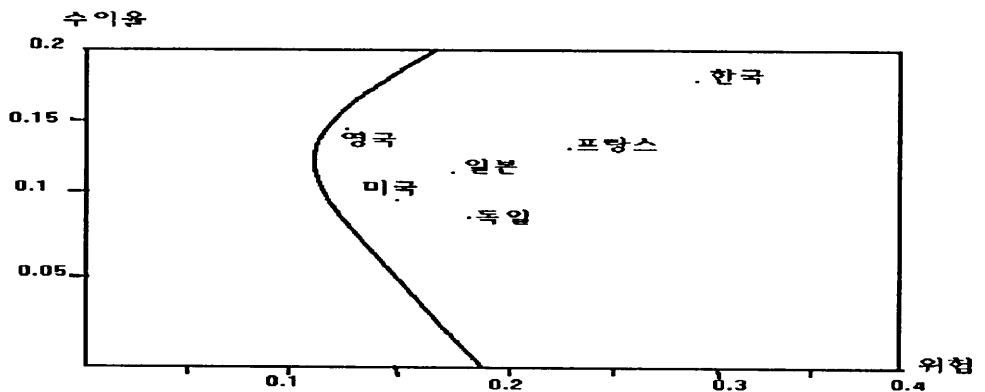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들의 相關關係를 보면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상관관계가 제일 높은 나라는 日本으로 0.69이며, 미국의 경우는 0.23, 기타 나라는 이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이 국가에 分散投資하는 경우 危險分散效果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28> 各國의 株式平均收益率間の 相關行列(1974~1993)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한 국	1.00	0.23	0.69	0.18	0.00	-0.21
미 국	-	1.00	0.34	0.42	0.51	-0.34
일 본	-	-	1.00	0.54	0.28	-0.01
영 국	-	-	-	1.00	0.40	0.17
독 일	-	-	-	-	1.00	0.16
프랑스	-	-	-	-	-	1.00

이들 국가들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하여 달성 가능한 위험·수익율간의 最適組合을 나타내는 效率的 境界(efficient frontier)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圖 6> 各國의 株式平均收益率과 危險 및 效率的 境界



따라서 상기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韓國證市는 효율적 경계선상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바 보험사가 한국증시에만 투자하는 것은 非效率的인 投資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株式의 海外分散投資를 통하여 투자위치(position)를 효율적 경계쪽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같은 수익율을 보장하면서 위험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新興市場(emerging market)이나 기타 선진국을 고려할 때 그 分散投資效果는 위의 예에서 보다 더욱 높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가 내국투자에만 전념한다는 것은 결국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율의 저하를 의미하고,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격 자유화시대에서는 궁극적으로 영업능력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결코 바람직한 資產運用戰略이 될 수 없다. 자본시장의 國際的 統合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황을 볼 때 海外投資能力은 우리나라 보험사에게도 대내외 보험시장을 막론하고 경쟁력의 선점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기의 예는 과거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미래의 상황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당위성은 존재하지만 더욱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는 海外投資 專門人力이나 地域專門家の 確保를 통한 換危險 문제나 投資對象國家危險(country risk), 稅率이나 海外投資의 去來限度와 같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有價證券投資 목적으로 現地法人 형태로 진출해 있는 국내보험사의 해외 법인인력이 평균 1~2명으로 국한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해외투자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외투자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모든 보험사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계획이 일률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中小型 保險社들의 경우에도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의 확대는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해외투자는 전문가의 육성, 지점 또는 現地法人의 設立 및 維持, 지속적인 정보의 수집비용 등과 같은 대규모 고정비용으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외 펀드의 가입을 통한 間接投資가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채듀레이션의 장기화 현상에 따라 資產/負債管理

의 효율성 제고측면에서 국내의 부족한 장기채유통시장을 감안하여 해외장기채 투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것이다. 그 이유로는 국내채권의 경우 3년 이내의 中・短期 債券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측면에서 볼 때 장기채와 비교하여 再投資危險(reinvestment risk)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저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내국의 中・短期債券에만 투자하는 경우 재투자위험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海外長期債에 대한 투자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表 29> 保險會社 規模別 海外 資産運用戰略

구 분	주 식	채 권
대 형 보 험 사	· 해외fund가입을 통한 투자확대 · 해외전문인력육성차원에서 제한적인 한도내에서 직접투자 확대	· 재투자위험 회피차원에서 장기채에 대한 투자확대 · 해외전문인력육성차원에서 제한적인 한도내에서 중・단기채 운용
중소형보험사	· 해외fund가입을 통한 투자확대	· 재투자위험 회피차원에서 장기채에 대한 투자확대

결론적으로 大型社의 경우 市場開放이 완료되는 2000년을 전후로 해외자본시장에서 세계유수의 보험사들과 경쟁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직접적인 海外投資力量의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中小型社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간접투자방식에 의한 해외자산운용을 하되 궁극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에 목표를 두고 자사의 실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投資專門人力 확보와 投資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결국 OECD에의 가입은 資産運用能力에 있어서도 OECD회원국의 수준만큼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조속히 자산운용능력을 제고하여 해외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를 極大化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함은 물론 環境變化를 자신의 成長機會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회사만이 統合化가 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 추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日氣가 나빠졌다고 해서 비행기가 계속 날지 못한다면 그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 참 고 문 헌 >

- 김기홍, 「UR협상타결 이후의 손해보험 경쟁력 제고방안」, 『손해보험』, 1994. 5.
- , 「손보사 분리계정제도 도입방안」, 『손해보험』, 1994. 10.
- , 「우리나라의 OECD가입과 국내 손보사 대응방안」, 『손해보험』, 1995. 2.
- , 「손해보험산업의 국제화 전략」, 삼성화재 국제심포지움 자료, 1995. 8.
- 김인기, 김장희,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진단과 전망: 전문가 의견을 통한 분석」, 『금융학회지』, 1996, pp. 85-112.
- 보험감독원, 「1994년도 연차보고서」, 1995.
- ,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 보험개발원, 「주요국의 보험자산운용 규제 및 현황」, 1996.
- 재정경제원 대외경제총괄과, 「OECD가입과 우리경제의 선진화」, 1996. 7.
- 조강필, 정영철, 「OECD가입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고찰」, 『보험조사월보』, 1996. 7.
- 통계청,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 1995. 8.
- 한국경제연구원, 「OECD가입과 한국경제의 자유화」, 1996.
-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Insurance Review Statistics 1989-1993*.
- Balassa, B., "Trade Liberalization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1965, pp. 99-123.
- Donni, O. and F. Fecher,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he Insurance Industry in The OECD Countries," 1995, mimeo.

- Dowling, W. Jay, "Insurance Industry 'Goes Global'," *Business America*, November 1, 1982.
- Ho, Ben, "Emerging Insurance Markets in Far East,"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April, 1995, pp. 141-147.
- Hogan, Arthur, Peruvemba Satish and Robert Witt,, "The Cost Structure of Distribution Systems in the U.S P/L Insurance Market,"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April, 1995, pp. 230-245.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1995*.
-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1987-1994*, 1996 ed.
- Shim, Hyung-Sup, "Understanding the Korean Insurance Market and Its Future Outlook", *The Geneva Paper on Risk and Insurance* 75, April, 1995, pp. 166-179.
- Shroath, Frederick W. and Christopher M. Korth. "Managerial Barriers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U.S. Property and Liability Insurers: Theory and Perspective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6, December, 1989, pp. 630-648.
- Skipper, Harold D. "Protectionism and Provision of International Insurance Service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4, March, 1987, pp. 55-85.
- Swiss Reinsurance Company, *Sigma*, 각년호.
- Tillinghast-Towers Perrin, *Insurance Pocket Book*, 1996.
- U. 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 S. Direct Investment Abroad*, 1994.
- Wolrath, Björn, "The Dynamics of the Scandinavian Insurance Market : Some Observations",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January, 1995, pp. 3-6.

Woodrow, R. Brian, "Insurance Services in the UR Services Negotiations : An Overview and Assessment of the Final Agreement,"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January, 1995, pp. 57-73.

<附錄 1> 保險關聯 OECD 資本移動 自由化規約內容 및 우리나라 關聯規程

자본이동자유화 항목	우리나라 제도	자유화 계획	비 고
XIII . 생명보험(List A) 생명보험계약에 따른 자본이동 A. 비거주 보험업자가 거주자인 수익자에게 지불하는 자본 및 확정연금의 송금 (비고) 생명보험계약에 관련되는 것중 확정연금 이외의 보험료, 연금의 송금은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D/3)의 적용을 받음. 생명보험계약 이외의 것에 의한 송금은 그 종류, 크기를 불문하고 항상 경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경상무역외규약의 적용을 받음. 계약체결 당시에는 보험료를 납부할 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업자와 같은 국가의 거주자이었으나, 그후 거주지국이 변경된 경우에도 A, B의 송금은 자유임.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확정연금 등을 수취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요함.(외국환관리규정 제6-3조 제2항)		- 유보없음

자본이동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B. 거주자인 보험업자가 비거주 수익자에게 지불하는 자본 및 확정연금의 송금 (비고) 생명보험계약에 관련되는 것중 확정연금 이외의 보험료, 연금의 송금은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D/3)의 적용을 받음. 생명보험계약 이외의 것에 의한 송금은 그 종류, 크기를 불문하고 항상 경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경상무역외규약의 적용을 받음. 계약체결 당시에는 보험료를 납부할 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업자와 같은 국가의 거주자이었으나, 그후 거주지국이 변경된 경우에도 A, B의 송금은 자유임.	◦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보험료·보험금, 기타 보험사업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지급은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필요(외국환관리규정 제6-11조제1항제6호 가목) ◦ 외국인거주자 또는 해외이주자가 외국에 이주한 후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의 지급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필요(외국환관리규정 제6-11조제1항제6호 나목)		- 유보없음

<附錄 2> 保險關聯 OECD 經常貿易外去來 自由化規約內容 및 우리나라 關聯規程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 제도	자유화 계획	비고
D. 보험 D/1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비고) 1. 다음 항목의 송금은 자유임. a. 타회원국에서 지불되어야 할 사회보장기여금 및 사회보험료 b. 타회원국에 거주하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또는 이들을 위해 (직접 송금을 못하는 경우) 그 국가의 사회보장 또는 사회보험당국에 지불하는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급부 2. 송금이 관련된 보험이 관련회원국중 한 나라에 의해서만 사회보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다 자유로운 조치를 부여하는 규정이 적용됨. 3. 민간 보험업자가 수행하는 사회보험거래에 대해서는 부속서 I 의 제Ⅲ부 및 제Ⅳ부의 규정도 적용됨.	○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관련지급은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요함(외국환관리규정 제6-11조 제1항 제6호) -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보험료·보험금, 기타 보험사업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제비용 - 수출물품의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 가입하는 생산물책임보험의 보험료 - 선주의 상호보험료 ○ 상기 이외의 보험료와 이에 부대하는 비용의 지급은 외국환은행본점의 장의 인증필요(외국환관리규정 제6-11조 제2항 제1호) ○ 외국인거주자 또는 해외이주자가 외국에 이주한 후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의 지급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필요(외국환관리규정 제6-12조 제1항 제2호 나목) ○ 사회보장기여금 및 사회보험료의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은 없으며, 현행 의료보험제도하에서는 타회원국과의 송금거래 발생여지가 없음.		- 유보없음

경상무역의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 제도	자유화 계획	비 고
원수보험(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이외의 보험)과 관련된 거래¹ 및 송금 ¹ 여기에서 거래는 한 회원국의 피보험자와 타회원국 보험업자와의 원수보험계약(direct insurance contract)의 체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됨. (비고) 한 회원국의 보험업자와 타회원국의 피보험자간의 원수보험거래 및 두 개의 회원국에 거주하는 보험업자와 피보험자간의 보험료 및 기여금의 송금. 한 회원국의 보험업자에 의해서 타회원국에서 지불되었거나 지불되어야 할 보험금 및 급부금의 송금.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권행사에 필요한 금액의 송금. 부속서 I의 제1부에 정한 범위에 한함, * 이 조항은 D/2(국제교역상품관련보험), D/3(생명보험), D/4(기타 모든 보험)에 적용됨.	○ 외국보험사업자라 함은 대한민국의외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주로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보험업법 제2조 제2항) ○ 보험사업은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영위 불가(보험업법 제5조 제1항) ○ 보험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와 외국보험사업자에 한함(보험업법 제5조 제2항) ○ 외국보험사업자의 허가신청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대한민국에서의 주된 점포가 포함됨(보험업법시행규칙 제9조) ○ 외국보험사업자는 자본금에 대신하여 다음의 영업기금 필요(보험업법 제6조, 동시행령 제12조) - 내국인·외국인을 대상으로하는 보험사업 : 30억원이상 - 국내에서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하는 보험사업 : 5억원이상 - 국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하는 보험사업 : 1억원이상 ○ 국내에서 보험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 부속서 I 제1부 > D/2 국제교역상품관련 보험 1. 국제교역상품과 관련된 아래 보험계약 체결은 자유임. 단, 회원국은 그 보험업자 또는 보험사업을 하고자 하는 제3자의 영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음. 이 같은 계약의 이행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송금은 자유임. a) 어떤 회원국의 보험가입자와 동가입자 거주지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보험업자간의 계약.	◦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보험료·보험금, 기타 보험사업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필요(외국환관리 규정 제6-11조 제1항 제6호 가목). ◦ 따라서 비거주 보험가입자와의 원수보험 계약에 따른 국내보험업자의 대외송금에는 제한없음. ◦ 누구든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함(보험업법 제4조). ◦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해 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할 수 있는 경우(보험업법 시행령 제11조) - 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국내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 보험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 수출입직하보험 또는 항공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 유보없음

경상무역의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b) 어떤 회원국의 보험가입자와 동가입자 거주지국에서 설립된 외국보험업자간의 계약으로서, i) 그 외국보험업자의 본사에서 발효되는 것 ii) 가입자의 거주지국 이외의 회원국에 소재하는 보험업자의 사업장에서 발효되는 것 < 부속서 I 제1부 > D/3 생명보험 2. 어떤 회원국내의 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거주지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외국보험업자간의, 단체보험을 제외한, 생명보험과 관련된 거래 및 송금은 자유임. 단, 당해 회원국은 그 보험업자 또는 보험사업을 하고자 하는 제3자의 영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음.	- 기타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o 수출입에 직접 수반되는 보험료 및 보험금의 송금은 허가불필요 (외국환관리규정 제6-10조 제2호) o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외국보험사업자의 본점도 우리나라에 cross-border를 제공할 수 있음. o 생명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소재 보험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은 불가하나, 국내에서 영위되지 않는 보험종목은 체결가능 (보험업법 제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11조)	'97년 1월부터 자유화	- 유보없음 - 유보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3. 기존계약에 대해			
a) 거주자의 비거주 보험업자에 대한 보험료 송금은 자유임	○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는 인정되고 있음 (보험업법시행령 제11조 제2호)		- 유보없음
b) 거주보험료의 비거주 보험수익자에 대한 연금(annuity) ¹ 및 보험연금(annuity)중 확정연금 이외의 송금은 자유임	○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험료·보험금, 기타 보험사업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필요(외국환관리규정 제6-11조 제1항 제6호) ○ 기타 보험료와 이에 부대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본점의 장의 인증필요(외국환관리규정 제6-11조 제2항 제1호)		- 유보없음
¹ 생명보험과 관련되는 자본이나 확정연금의 송금은 자본이동 자유화규약(List A/XIII)의 규제대상임.			
4. 지급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과세상 공제를 허용하는 회원국은 그 보험업자의 설립장소(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하고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여야 함.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다음 지급보험료는 당해년도 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함 (소득세법 제61조의 2) - 의료보험료 -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 등으로서 만기 환급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 ○ 세법상 보험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설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거주자의 지급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유보없음

경상무역의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 부속서 I 제1부 > D/4 기타 모든 보험 5. D/2(국제교역상품관련보험) 및 D/3(생명보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종목중 단체보험 및 보험신청인의 거주지국에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을 제외한 보험과 관련된 것으로서 어떤 회원국내의 신청인과 그 신청인 거주지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외국보험업자간의 거래 및 송금은 자유임. 단, 보험가입자의 거주지국은 당해 보험업자 및 보험사업을 하고자 하는 제3자의 영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음. 6. 위험이 존재하는 회원국에서 위험의 부도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와 가입자 거주지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외국보험업자간의 거래 및 송금은 자유임. 7. 지급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과세상 공제를 허용하는 회원국은 그 보험업자의 설립장소(국내 또는 국외)에 상관없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여야 함.	○ 손해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외국소재 보험사업자와의 보험계약체결은 불가하나 국내에서 영위되지 않는 보험종목 및 항공보험은 체결가능(보험업법 제4조, 동시행령 제11조). ○ 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의 보험계약은 가능하며(보험업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보험료의 송금은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사항임(외국환관리규정 제6-11조 제1항 제6호 가목)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다음 지급보험료는 당해년도 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함 (소득세법 제61조의 2) - 의료보험료 -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 등으로서 만기 환급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 ○ 세법상 보험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설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거주자의 지급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97년 1월부터 장기상해, 선박, 여행보험 자유화	- 유보 - 유보없음 - 유보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 리 나 라 제 도	자 유 화 계 획	비 고
8. a) 보험업자가 자신을 위해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보험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정산되거나, 지급되거나 또는 지급될 배상금을 송금하는 것은 자유임.	◦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보험료·보험금, 기타 보험사업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필요(외국환관리규정 제6-11조 제1항 제6호 가목)		- 유보없음
b) 보험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부대비용 또는 기타금액의 송금은 자유임.	◦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보험료·보험금, 기타 보험사업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필요(외국환관리규정 제6-11조 제1항 제6호 가목)		- 유보없음
c) 개별적으로 정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회원국은 자국내에서 설립된 보험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상호협정에 의하여 보험청구를 정산하는 경우 양측의 지불금을 상쇄하고, 그 차액을 송금하는 것을 승인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가 외국의 보험사업자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재보험료, 재보험금, 대행증개수수료, 대행업무비용, 공탁금 및 공탁금이자 등을 지급 또는 영수함에 있어서 그 대차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요하지 않음(외국환관리규정 제7-5조 제1항 제4호)		- 유보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 리 나 라 제 도	자 유 화 계 획	비 고
D/5 재보험 및 재재보험과 관련된 거래 및 송금 (비고) 부속서 I의 제II부의 규정도 적용됨.	◦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내의 보험사업자와 비거주자간에 의화표시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의 재보험계약 체결은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음(외국환관리규정 제10-101조 제6호). ◦ 재보험 및 재재보험의 국경간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 특정보험물건에 대한 국내사 우선출재제도 및 해외요율구득에 대한 제한이 있음. ◦ 국내사우선출재제도(재보험관리규정제8조) - 국내 원보험회사들이 재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국내보험회사(국내진출 외국보험회사 포함)에 우선출재하여야 함(항공보험 제외). - 국내사 초과분이나 국내사가 재보험인수를 거부한 보험물건에 대해서는 해외직접출재가능 ◦ 해외요율구득에 대한 제한(보험요율구득에 관한 협정) - 국내 원보험사와 대한재보험(주)간에 재보험특약이 있는 보험의 요율을 해외로부터 구득할 경우 대한재보험(주)를 통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보험요율구득 장구 일원화	- '96. 4월 선박, 자동차, 보충, 적하, 상해, 근재, 장기보험등 - '97.4월 완전자유화	- 유보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 부속서 I 제II부 > D/5 재보험 및 재재보험 1. 현금손실과 관련된 계정뿐 아니라 출재보험업자가 보유하는 보증예탁금의 설치 및 조정을 포함한 재보험거래와 관련된 계정은 재보험협약 또는 약정의 규정에 따라 원보험 계약상의 통화, 출재보험업자 거주지국 통화 또는 수재보험업자 거주지국통화로 개설될 수 있음 2. 제1항에 언급된 계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의 정산은 승인되어야 함. 그 정산은 출재보험업자와 수재보험업자 상호간의 받을 금액을 상쇄하거나, 또는(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아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a) 받을 금액이 있는 보험자 거주지국으로의 송금, 또는 b) 아래 제3항에 의거하여 개설된 은행계정을 통한 지불, 또는 c) 만약 당해 계약에서 타회원국 통화로 지불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그 타회원국에서 아래 제3항에 의거하여 개설된 은행계정으로의 송금	○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내의 보험사업자와 비거주자간에 외화표시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의 재보험계약 체결은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음(외국환관리규정 제10-101조 제6호). ○ 거주자인 보험사업자는 재보험거래와 관련된 계정을 원화 및 외화로 개설할 수 있음(외국환관리규정 제10-29조, 제1항). 비거주자인 보험사업자도 재보험거래와 관련하여 외화표시 은행계정과 자유원계정을 개설할 수 있음(외국환관리규정 제10-20조 제2항). ○ 보험사업자가 외국의 보험사업자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해 재보험료, 재보험금, 대행중개수수료, 대행업무비용, 공탁금 및 공탁금이자 등을 지급 또는 영수함에 있어서 그 대차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요하지 않음(외국환관리규정 제7-5조 제1항 제4호).		- 유보없음 - 유보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3. 재보험자가 회원국에서 설립된 은행에 계정을 개설하는 것은 승인되어야 함. 상기 제2항 b) 및 c)의 규정에 따라 정산되는 재보험거래로 인하여 계정보유자에게 지불될 금액은 이 계정에 입금될 수 있음. 만약 재보험정산이 제2항 b) 및 c)의 규정에 따르고 통상의 관행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계정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이 계정에서 정산금액이 출금될 수 있음. 또한 동계정 잔액은 당해 계정을 보유하는 재보험업자 거주지국으로 송금될 수 있음. 4. 제1항 내지 제3항의 제규정은 재보험의 경우에도 적용됨.	○ 외국재보험사업자는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외국환은행에 외화표시 은행계정 및 자유원계정을 개설할 수 있음(외국환관리규정 제10-20조 2항) ○ 계정의 잔액도 당해 계정을 보유하는 재보험사업자의 거주지국으로 송금될 수 있음(외국환관리규정 제10-2조, 제10-26조, 제10-35조의 3, 4) ○ 상기계정의 재보험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입·출금은 자유임. ○ 재보험에 관한 각종 규정은 재보험에도 적용됨.		- 유보없음 - 유보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D/6 외국보험업자의 지점·대리점 설치 및 영업에 관한 조건 (비고) 1. 타회원국 보험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영업에 관한 부속서 I 의 제Ⅲ부에 규정된 범위내에서의 승인 2. 이 같이 승인받은 보험업자의 지점 및 대리점과 그 본사간의 송금: 부속서 I 의 제Ⅳ부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적용됨. <부속서 I 의 제Ⅲ부> D/6 외국보험업자의 지점·대리점 설치 및 영업에 관한 조건 - 일반사항 1. 보험에 관한 모든 법령상, 행정상 규제는 내외국 보험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외국보험업자는 내국보험업자보다 과중한 부담을 지지 않아야 함.	○ 보험업법상 유일한 내·외국보험업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자본금 또는 기금” 관련 사항임(보험업법 제6조, 동시행령 제12조)		- 유보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 리 나 라 제 도	자 유 화 계 획	비 고
- 승 인 2. 어떤 회원국내에서 보험회사의 설립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a) 그 회원국은 자국보험업자에게 대한 것과 동일하게 타회원국 보험업자를 대우하여야 함.	- 국내보험사업자는 생명보험사업의 경우 100억원 이상, 손해보험사업의 경우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함. - 외국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영업기금을 요함. ·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 : 30억원이상 ·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 : 5억원이상 ·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의 모집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 1억원이상 ○ 금액의 규모로 보아 내·외국 보험사업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음 ○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대상자는 주식회사·상호회사와 외국보험사업자에 한함(보험업법 제5조). ○ 허가와 관련하여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한 차별대우는 없음.		- 유보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b) 관련당국은 승인을 신청하는 외국보험업자에게 승인을 위하여 당해보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정보를 충분하게, 그리고 자세히 기재한 서면안내장을 제공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전에 앞으로 필요한 절차를 적절히 간소화하고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보험사업 허가신청시 제출서류는 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음(보험업법 제5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9조) ◦ 또한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영문자료를 발간·제공하고 있음. - 외국생명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치 허가기준 - 외국손해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치 허가기준		- 유보없음
c) 승인을 위하여 법률·재무·회계·기술적인 요건(가령 사업형태 관련요건, 이사 또는 관리자의 자격, 재보험약정 등의 요건) 이외의 다른 기준, 특히 국내보험시장의 수요와 같은 경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관련당국은 보험업자의 승인신청시 이들 기준을 고지하고, 내외국 보험업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여야 함.	◦ 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상 경제적 수요심사(ENT:Economic Needs Test)를 한다는 기준이 있으며 내·외국보험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함	- '97년 1월부터 ENT 패지	- 유보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 제도	자유화 계획	비 고
d) 관련당국은 다른 회원국 보험업자의 승인신청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즉시 당해 보험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허가신청서가 하자없이 작성되어 제출된 경우 심사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외국생명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치 허가기준 및 외국손해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치 허가기준)		- 유보없음
e) 관련당국이 타회원국 보험업자에게 승인신청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정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내국보험업자에게 대한 것과 동일하여야 함.	◦ 보험사업허가 담당공무원은 허가신청서류의 내용보완을 요구하거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신청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봄(외국생명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치 허가기준, 외국손해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치 허가기준).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한 차별은 없음.		- 유보없음
f) 타회원국 보험업자의 승인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관련당국은 그 결정이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내국보험업자에 대한 것과 동일하여야 함.	◦ 허가신청 기각시 기각사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한 차별은 없음		- 유보없음
g) 승인이 기각되거나 관련당국이 상기 d)항에 언급된 6개월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신청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타회원국 보험업자는 내국보험업자가 갖는 것과 동일한 이의신청권을 가짐.	◦ 이의신청에 대하여 별도규정이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내·외국인 보험사업자 차별은 없음		- 유보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 대표자 3. 회원국 보험업자가 타회원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보험업자는 그 타회원국에 주거를 갖고 있거나 사실상 거주하는 자를 대표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적은 불문함. - 재정보증¹ ¹ 본 규약의 목적상 “재정보증”이라는 용어는 정액 또는 최초예탁금, 조정가능예탁금 및 변동예탁금으로 구성된 자산과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 준비금 및 기타 준비금으로서 보험업자의 사업수행지국에서 유지하여야 하는 준비자산을 포함함 • 정액 또는 최초예탁금(fixed or initial deposit) : 보험업자가 하나 이상의 지점에서 영업개시 이전에 사업수행지국의 특정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금액 • 조정가능예탁금(adjustable deposit) : 보험업자의 사업정도에 따라 조정되는 예탁금으로서 기술적준비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 • 변동예탁금(variable deposit) : 보험업자의 사업정도에 따라 조정되고 기술적준비금에 산입될 수 있는 것	○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선임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 상주하여야 함(외국생명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치허가기준 및 UR서비스 양허표).		- 유보없음

경상무역의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 제도	자유화 계획	비 고
기술적준비금(technical reserve) : 보험업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별도로 보유하는 금액 ○ 일반규정 4. 회원국은 현재 및 장래의 법령상 및 행정상의 보험규제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와 기타 청구인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타회원국 보험업자의 재정보증금액을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하여 보험업자의 자산분산을 방지하여야 함. 보증에 탁은 이같은 보호목적에 한정되어야 함	○ 외국보험사업자에게만 요구되는 예탁금은 없음. ○ 내·외국 보험사업자는 영업개시전에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30%를 보험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함. - 예탁금의 반환 · 책임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하고 이익이 발생할 경우 · 해산 또는 사업폐지시 ·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내·외국대리점은 영업개시전에 다음의 영업보증금을 소속회사에 예탁하여야 함. - 생명보험 · 개인대리점 : 2백만원 · 법인대리점 : 4백만원 - 손해보험 · 초급대리점:개인(2백만원),법인(4백만원) · 일반대리점:개인(2.5백만원),법인(5백만원) · 총괄대리점:개인(3백만원),법인(8백만원)		- 유보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 정액 또는 최초예탁금 및 조정가능예탁금에 관한 규정 5. 자국 보험업자 또는 자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타회원국 보험업자에게 정액 또는 최초예탁금 및/또는 조정가능예탁금을 요구하는 회원국은, a) 정액 또는 최초예탁금을 기술적준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뿐 아니라 이 같은 예탁금의 액수 및 산출에 있어서 자국보험업자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타회원국 보험업자를 대우하여야 함. b) 그 재량에 의해 아래 i), ii)의 한도 내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아래 수단에 의해 예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 즉, i) 소요예탁금액 한도까지 - 본점이 그 회원국에 소재하고 있는 인가받은 은행의 보증, 또는 - 본점이 그 회원국에 소재하고 있는 인가받은 보험업자의 보증. 그 보증은 보증보험증권의 예치로 성립됨. 또는	○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의 산출과 기술적준비금의 산입에 있어서 내·외국보험사업자간에 차별은 없음(보험업법 제6조의 2 및 제98조) ○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의 50%의 범위안에서 본국통화 또는 보험감독원이 정하는 본국통화표시 유가증권으로 예탁가능(보험업법시행령 제12조의 2) ○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음(보험업법시행령 제30조)		- 유보 없음 - 유보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 본점이 그 회원국에 소재하고 있는 인가받은 은행 또는 보험업자에 의한 증권예치로서, 해당 보험업자의 이름으로 또는 그의 계정에 예치되었음이 선언된 것 ii) 소요 예탁금액의 적어도 50%의 한도 내에서 - 보험업자의 본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통화예치 및/또는 그 국가의 통화로 표시된 증권의 예치. 단, 동증권이 보험업자가 영업하고 있는 국가에서 결제가능하거나, 만약 동증권이 보험업자 본사 소재지국에서 매각되어야 할 경우, 그 당해국 당국은 증권판매대금의 송금을 승인하여야 함. 이 같은 보증에 이용될 증권 및 통화는 먼저 당해보험업자가 영업하고 있는 국가의 보험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러한 증권과 통화는 유사한 국내자산의 구성 및 이용을 규제하는 법규에 따라 동 보험감독관청의 통제하에 있어야 함.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8. 자국 보험업자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변동예탁금 또는 기술적준비금의 예탁을 자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타회원국 보험업자에게 요구하는 회원국은 그 준비금 및/또는 예탁금의 계산방법이 자국 보험업자에게 적용되는 관례적인 규정보다 더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투자 및 예치의 규제 ○ 일반규정 9. 각 회원국은 상기 제5항 b) ii)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투자의 선택 및 평가 그리고 감가상각의 조정에 있어서 자국 보험업자와 자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타회원국 보험업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	○ OECD 규약상의 변동예탁금에 해당하는 제도는 없음. 기술적 준비금(책임준비금 등)에 있어서는 내·외국사를 불문하고 모두 요구되며, 내·외국보험사업자간에 차별은 없음(보험업법 제98조) ○ 내·외국보험사에 대하여 동일한 자산운용준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동산취득에 있어서는 외국보험사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함.	- '95년말 신고제로 전환	- 유보없음 - 유보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 리 나 라 제 도	자 유 화 제 획	비 고
10. 어떤 회원국이 자국 보험업자 및 자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타회원국 보험업자 모두에게 투자예탁금을 요구하는 경우, 동회원국은 예탁방법에 있어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에 대해 투자예탁금을 요구하지 않음.		- 유보없음
11. 어떤 회원국이 타회원국의 보험업자에 게만 투자예탁금을 요구하는 경우, 동요구는 예탁된 투자의 선택 및 평가에 있어서 자국 보험업자에 대한 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것이어서는 안됨.	◦ 보험사업자에 대해 투자예탁금을 요구하지 않음.		- 유보없음
12. 어떤 회원국이 자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타회원국 보험업자에게 기술적준비금에 산입되는 투자예탁금을 요구하고, 자국 보험업자에게는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예탁금 산출에 있어서 아래의 것이 공제되어야 함. a) 생명보험, 결혼 및 출산보험 그리고 자본회수사업 이외의 종류의 사업의 경우, 보유 또는 은행에 예치한 현금 및 3개월미만된 미회수보험료 또는 공동인수보험료(조세, 공과금, 수수료 제외). 단,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30% 한도내에서 공제됨.	◦ 보험사업자에 대해 투자예탁금을 요구하지 않음.		- 유보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b) 생명보험, 결혼 및 출산보험 그리고 자본회수사업의 경우 i) 전회계년도의 보험료수입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한도내에서 보유 또는 은행에 예치한 현금 ii) 3개월미만된 미회수보험료 또는 공동인수보험료(조세, 공과금 및 수수료 제외금액)의 90%한도내에서 공제됨. ○ 투자승인 13. 각 회원국은 자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타회원국 보험업자에게 최대한의 투자선택을 허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보험회사재산운용준칙 - 재산운용의 기본방향(제4조) : 그 재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운용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 및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 재산이용은 총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비율 초과 불가(제7조 제1항) · 주식의 소유 : 30% · 부동산소유(업무시설용 10%, 투자사업용 5%) · 동일인에 대한 대출 : 3%(다만, 총자산 1조원 초과회사는 300억원+1조원 초과금액의 1.5% 이내) · 동일인에 대한 대출 및 투자 : 5%		- 유보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14. 명백하게 지정된 투자이외에, 보험감독에 대한 각 회원국의 법률 및 규정은 타회원국의 보험업자가 해당회원국 당국이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당국이 인정하는 다른 투자방법에 의해서 기술적준비금 및 예탁금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함.	· 동일물건 담보대출 : 3% ·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투자 및 대출 : (투자 5%, 대출 5%) ·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투자 및 대출 : (투자 3%, 대출 3%) · 중소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소유 : 0.2%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 비상장주식 : 자기자본이내 · 외화증권 등에의 투자 : 10% ○ 우리나라는 투자종목별로 상한선을 정하여 투자다양화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유보할 필요가 있음. ○ 각 투자종목별 상한선(보험회사재산운용준칙 제7조)을 지키는 한 언급되지 않는 기타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가 가능함. ○ 그러나 보호예탁금은 현금으로 납입되어 해당 보험사업자와의 협의하에 보험감독원이 운용하므로 보험업자에 의해 기타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음.		- 유보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15. 각 회원국은 기술적준비금 및 변동예탁금중(정액 또는 최초예탁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 적어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자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타회원국의 보험업자가 자국내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함. ○ 투자변경 16. 주기적인 조정기간중 어느 시점에서 어떤 회원국의 보험업자가 기술적준비금의 예탁을 요구하는 다른 회원국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예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탁되었음을 그 다른 회원국의 보험감독관에게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감독관청은 예탁금 초과분의 인출을 지체없이 승인하여야 함.	○ 보험회사의 부동산 취득한도는 총자산의 15%임. - 부동산담보대출에는 제한이 없음. ○ 우리나라는 기술적준비금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의 예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초과예탁분 환불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 유보없음 - 유보없음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	우리나라제도	자유화계획	비고
17. 회원국은 자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타회원국의 보험업자가 최소한의 질차를 통해 투자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함. a) 특히, 아래의 경우에 다른 투자에 의한 사전대체를 요구할 수 없음 i) 보험감독관청의 사전승인에 의하여 예탁증권이 동일한 인가기관에서 인출, 대체되는 경우, 그리고 ii) 예탁증권이 당해보험업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나 부동산 담보에 의하여 대체되는 경우. 단, 그 대체는 짧은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함. b) 사전대체가 면제될 수 없는 기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보험감독관청은 최소한의 지체로 그 같은 대체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 및 기타 청구인 보호를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험업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과징금을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에 대한 투자예탁금을 요구하지 않음.		- 유보없음

<附錄 3> 우리나라의 OECD 가입추진경과

시 기	현 황
1. '70년대 • '78.6 • '78.10	• 블루멘탈 미국 재무장관, 우리나라의 OECD가입거론 • 칠강위원회 설립직후 우리나라 가입초청 • 무역위원회 산하 수출신용그룹에 옵저버 참여 요청
2. '80년대 • '80.1 • '88.4 • '89.1 • '89.3 • '89.10	• OECD사무국, 우리나라와 경제협의회 개최제의 • 동경개최 미·일·유럽의 고위급회의시 한국의 OECD 가입권유 • OECD사무총장, ANICs중 한국을 유력한 가입후보국으로 지칭 • OECD에 연락관(Liaison Officer)파견 및 우리나라 공무원 OECD연수 최초파견(개발센터) • 페이에 사무총장, OECD 회원국후보로 우리나라 거론 (일본가입 25주년기념 회의시)
3. '90년대 • '90.2 • '91.4, 9, 11 • '91.10 • '91.11 • '92.1 • '92.4 • '93.6 • '93.7 • '94.2 • '94.6 • '95.3 • '95.11 • '95.12 • '96.2 • '96.4 • '96.5 • '96.6 • '96.7 • '96.10	• 우리나라, 조선실무작업반 정식가입 추진결정 • 3차에 걸쳐 정부조사단 파견 • 페이에 사무총장, 외무장관초청으로 방한 - 한국정부, “'90년대 중반 OECD가입의사” 표명 •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개발 7차계획 설명회 개최 • 제7차 5개년계획 심의회에서 “7차 5개년계획 후반기에 OECD 가입추진”키로 확정 • OECD각료이사회, 한국의 가입문제 협의 - 한·OECD간 공식접촉 확대를 환영 • OECD각료이사회 성명에 “한국의 OECD 참가활동 확대를 환영”하는 내용포함 • 신경제 5개년계획 “'96년 OECD가입”계획 확정 • 경제동향검토위원회(EDRC)/한국경제검토회의 개최(파리) • 각료이사회에서 한국과의 가입조건 협의에 관한 권한을 사무국에 위임 • 가입신청서 제출 • 해운위원회 심사 종료 • 보험위원회 심사 종료 • 금융시장위원회 심사 종료 • 1차 CIME/CMIT 심사 • 환경위원회 심사 종료 • 재정위원회 심사 종료 • 2차 CIME/CMIT 심사 종료 • OECD이사회, 만장일치로 한국을 OECD회원국으로 초청키로 결정

資料: 재정경제원 대외경제총괄과, 「OECD가입과 우리경제의 선진화」, 1996. 7.

<附錄 4> OECD會員國 生保社의 資産運用收益率 推移

(單位: %)

년 도 국 가	1990			1991			1992			1993			1994		
	내국사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내국사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내국사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내국사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내국사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오스트리아	7.35	7.47	8.06	7.76	7.85	8.56	6.49	7.12	8.04	4.85	4.98	3.90	4.55	4.55	-
덴 마 크	8.98	9.92	-	7.51	8.35	8.84	6.86	7.91	8.99	5.06	5.82	6.69	5.31	5.91	6.48
네 덜 란 드	9.32	9.69	9.52	9.65	9.79	10.31	9.67	9.53	9.49	7.40	7.57	7.62	6.45	6.63	6.93
포 르 투 갈	1.46	0.61	3.18	0.68	0.26	2.24	0.57	0.12	1.13	0.57	0.61	0.59	0.50	0.58	0.77
캐 나 다	10.93	11.85	10.96	8.59	9.40	8.96	6.93	7.38	7.57	5.95	6.73	6.37	6.64	7.40	7.07
미 국	8.42	8.42	8.80	7.47	7.44	7.71	6.32	6.29	6.00	5.45	5.41	5.00	6.60	6.59	5.82
일 본	4.57	5.48	6.15	4.90	5.54	5.71	3.90	4.80	4.35	2.93	3.56	3.34	2.57	2.74	2.62
한 국	8.74	12.59	13.48	9.56	13.21	13.64	9.10	11.44	13.88	7.56	8.69	11.13	7.65	8.45	11.75

<附錄 5> OECD 會員國 損保社의 資産運用收益率 推移

(單位: %)

년 도 국 가	1990			1991			1992			1993			1994		
	내국사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내국사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내국사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내국사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내국사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오스트리아	7.08	7.22	8.36	6.35	6.71	7.53	3.86	5.20	7.00	3.65	4.07	5.63	3.55	3.96	5.80
덴 마 크	5.93	7.47	-	5.08	7.01	-	6.03	6.91	-	4.82	4.24	-	5.21	3.09	-
네 덜 란 드	9.19	8.03	7.76	9.08	8.64	7.96	9.08	7.81	7.26	6.99	5.92	5.64	6.36	5.99	6.06
포 르 투 갈	5.04	7.37	3.22	3.95	2.76	3.19	3.04	2.32	2.65	2.85	2.41	1.89	2.17	1.72	1.58
캐 나 다	9.20	8.29	10.19	8.04	7.46	9.25	5.78	6.65	8.05	5.17	5.91	7.23	6.25	6.56	8.00
미 국	6.88	6.25	6.42	6.27	6.16	6.06	5.48	6.02	5.82	4.65	4.60	4.81	5.67	5.58	5.99
일 본	5.25	7.24	6.57	5.13	6.49	5.95	3.91	4.99	-	2.88	3.69	-	2.70	3.68	3.13
한 국	8.77	-	12.76	9.60	-	14.05	8.80	-	12.73	6.72	-	9.48	6.64	-	10.28